

권리론

권리, 권한, 권력

사진가 이시우
www.leesiwoo.net

목차

- (1) 권리의 탄생
- (2) 권리의 구조
 - 1) 권리
 - 2) 권한
 - 3) 권한의 실체
 - 4) 권한형태
 - 5) 법
 - 6) 권력
 - 1. 권한의 저울
 - 2. 권한의 시장
 - 3. 권력의 공장
 - 4. 권력의 은행
- 7) 국가주권
 - 1. 정치권력
 - 2. 공간권력
- 8) 국제패권
- (3) 권리의 소멸
 - 1) 주체
 - 1. 자기결정권
 - 2. 조직력
 - 3. 권리지배
 - ㄱ. 권력배제
 - ㄴ. 권리지배의 권력화
 - 2) 권리의 소멸

(1) 권리의 탄생

「권리」란 말은 하늘이 내려준 것이란 초역사적관념이 꽤 퍼져있으나 사실은 역사적인 개념에 불과하다. 특히 근대나 자본주의생산양식의 출현과 권리의 탄생은 상호연관되어 있다. 권리론은 경제학의 가치론에 해당한다. 권리의 탄생이 있다는 것은 권리의 소멸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 글은 권리의 탄생과 발전과 사멸의 필연성을 서술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가 사용하는 「권리」란 단어의 탄생을 살펴보자. 「권리」는 미국인 휘튼의 국제법 책 1)을 번역한 마틴의 『만국공법』(1864)²⁾에서 비롯한다. 역자인 마틴은 영어의 'right'를 번역하

1) 휘튼(Henry Wheaton, 1785-1848)의 생애는 E. Baker, *Henry Wheaton 1785-1848*, (Philadelphia: Univ. of Pennsylvania Press 1937); *Dictionary of American Biography*, Vol. X. pp.39-42; 김용구, 『세계관총들의 국제정치학』, (나남, 1997), pp.54-62, 松隈 清, 『國際法史の群像』, (酒井書店, 1992), pp.321-358 참조. 휘튼의 저서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with a*

는 과정의 어려움을 『공법회통』에서 말한 바 있다. 이 『만국공법』에서의 권리는 주로 국제법상의 국가의 권리에 관한 것이며, 사인(私人)의 권리에 대해서는 간단히 언급하였을 뿐이다. 점차 사인의 권리라는 관념이 형성되면서, 권리라는 말이 곤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중국의 고전에서 「권리」라는 말은 이기적인 이익추구를 함의(含意)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일본에서는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權利’라는 말이 사용되기도 하였다.³⁾ 나카에 초민(中江兆民, 1847-1901)은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번역한 『민약역해(民約譯解)』(1882)에서 droit를 권(權), 의(義), 도리(道理) 등으로 번역하기도 하였다. 한자의 權에는, 즉 힘이 라는 뜻과 그 번역어로서의 right의 의미가 혼재하고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즉 개개인의 「권」은 후자이며 군주가 말하는 「권」은 전자의 의미이다.⁴⁾

한국에서 중국의 국제법 문헌이 일반인에게 본격적으로 소개된 것은 정관잉(鄭觀應, 1841-1923)의 『이언(易言)』(1871)이 1883년에 복간되고, 또 한글판까지 나오게 되면서부터라고 보겠다.⁵⁾ 이 책에서는 당연히 권리의 관념이 자세하게 소개되었다. 또한 1896년 학부에서는 블룬츨리(伯倫知理)의 『公法會通』(중국판 1880년)에 이경직(李庚植)의 서문을 붙여 그대로 발간하였다. 이 책의 일러두기에서 마틴은 이렇게 적고 있다.⁶⁾

원문에 이따금씩 한문으로써는 드러내기가 어려운 뜻이 있다. 따라서 사용한 글자들이 억지로 끌어 맞춘 듯이 보이기도 할 것이다. 곧 예를들면 權이라는 글자는 책 속에서 다만 관리가 쥐고 있는 권력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널리 사람이 이치적으로 마땅히 얻어야 할 몫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래서 때로는 利라는 한 글자를 더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權利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글자들은 처음 볼 때에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겠지만, 여러 번 보면,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⁷⁾

Sketch of the History of the Science (1836), (New York: Da Capo Press, 1972재판)를 중국에서 활동하던 미국 선교사 마틴이 한역하면서 중국에 처음 소개되었다.

- 2) 마틴(W. A. P. Martin, 丁良[丁冠西], 1827-1916)의 생애는 Ralph R. Covell, *W. A. P. Martin. Pioneer of Progress in China*, (Washington, D. C., 1978); 김효전, 『근대한국의 국가사상』, 412면 이하 참조.; 惠頓著, 丁良譯, 『何勤華 点校, 萬國公法』(1864年),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03年).
- 3) 에컨대 니시무라 시게키(西村茂樹, 1828-1902)나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대표적이며, 후쿠자와는 『서양사정(西洋事情)』에서는 ‘통의(通義)’, 『학문의 권장(勸獎)』에서는 ‘권리통의(權利通義)’, ‘권의(權義)’로 번역하며, 『통속민권론(通俗民權論)』에서는 ‘權利’도 혼용하고 있다.(『福澤諭吉著作集』第7卷, (慶應義塾出版會, 2003), p.102). 일본의 한 책자에서는 권리는 영어의 right의 번역어가 아니라 독일어의 Recht를 번역한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한다. 즉 번역어로서의 ‘권리’를 생각하는 경우,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영어의 right의 譯語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권리’는 무엇보다도 독일어의 Recht에서 유래한다. 왜냐하면 ‘권리’는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Der Kampf ums Recht, 1872)의 번역을 통해서 확립했기 때문이다. 많은 학술용어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철학의 아버지인 니시 아마네(西周)의 업적이었다(堅田 剛 집필, 『權利と義務』 항목, 石塚正英・紫田隆行 監修, 『哲學思想彙譯語事典』, (論創社, 2003), p.102). 그러나 西周는 피세링의 강의록인 『만국공법』을 번역할 때 당시 이미 널리 읽히고 있던 마틴의 한역 『만국공법』을 참고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거기서 이미 ‘권’이란 번역어가 사용된 것이다(야나부 아키라, 서혜영 옮김, 『번역어 성립사정』, p.159). 따라서 堅田剛은 전술한 마틴의 한역 『만국공법』이 일본에 전파되고 번각된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 4) 야나부 아키라, 서혜영 옮김, 『번역어 성립사정』, p.163.
- 5) 상세한 것은 이광린, 『「이언」과 한국의 개화사상』, 이광린, 『한국개화사 연구』, (일조각, 1985), p.27 참조. 정관잉의 저서의 최근 번역은 이화승 옮김, 『성세위언 - 난세를 향한 고언』, (책세상, 2003) 참조.
- 6) 원문. 公法既別爲一科 則應有專用之字樣 故原文偶有漢文所難達之意 因之用字往王似覺勉强 卽如一權字 書內不獨指有司操操之權 亦指凡人理所應得之分 有時增一利字 如謂庶人本有之權利云云 此等字句 初見多不入目 屢見方知爲不得已而用之也.

이처럼 권리란 말은 이해되었다기 보다는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익숙해진 단어이다. 우리에게 익숙해지도록 강요한 주체는 서구제국주의열강이다. 비서구에 있어 권리는 탄생한 것이 아니라 이식된 것이다. 그러나 서구 역시 권리의 개념은 근대자본주의를 배경으로 획득한 진통 속에서 탄생한 역사적 개념이다. 예를 들어 헤겔의 『법철학』에 있어 권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개인, 즉 인격이 전제되어야 한다. 관념론적인 헤겔에서도 근대이전엔 권리의 성립이 불가능했다.

로마법에서의 인격은, 인간은 우선 일정한 신분으로서 고찰되어 비로소 인격으로 간주된다...따라서 로마법에 있어서는 인격 그 자체조차 노예의 신분에 대비시키게 되는 것으로서 단지 하나의 신분·상태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로마법의 인격권의 내용은 노예에 대한 권리이다...로마법의 인격권은 인격 그 자체의 권리가 아니라 적어도 특수한 인격의 권리이다... 소유에 의하여 나의 의지는 인격적인 의지로서 동시에 개별자의 의지로서 나에게 객관화되므로 소유는 사유의 성격을 띠는 것이다.⁸⁾

소유, 즉 사유가 전제되어야 권리의 주체인 인격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즉 근대자본주의제도라는 환경이 법체계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맑스 역시 봉건적 세계에서는 모든 권리가 특권이었다고 말한다. 모든 도시·모든 계급·모든 길드는 인간이 끼어드는 곳이면 어디든지 항상 따라다니는 그 자신의 법에 따라 생활해 갔다. 이 시대에는 모든 시민들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인 형식적-법률적인 권위라는 이념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주체들의 평등은 단지 일정한 좁은 범위 내에 갇힌 관계들을 위해서만 가정된다. 따라서 동일한 신분의 구성원들은 신분법의 범위 내에서는 평등하였고 동일한 길드의 구성원들은 길드법의 범위 내에서는 평등하였다.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법적청구들의 일반적 추상적인 담지자로서의 권리주체는 이 단계에서는 단지 구체적인 특권의 점유자라는 역할 속에서만 나타난다.⁹⁾ 성밖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성안에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기에 ‘바바바’라는 소음으로만 들렸고 그들 ‘바바리안’은 야만인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리고 이들 야만인들에겐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성안의 공동체라고해서 처분권으로서의 근대적 권리가 인정된 것은 아니다. 고대 게르만 공동체인 마르크는 결코 소유권을 처분할 수 있는 법인이 아니었다. 공용지의 공공적인 성격은 공용지가 모든 마르크공동체 구성원들에 의해 사용되었다는 것에 의해 드러난다. 공공적인 필요를 위한 모금은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 처리되었고 필요의 정도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되었다. 만일 잔여분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공동연회를 위해 사용되었다. 이러한 관습은 항상적인 공공재산이라는 관념이 얼마나 걸맞지 않는 것인지를 보여준다.¹⁰⁾ 이는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문중의 종중 땅 같은 공동체 재산이 처분가능하지 않은 재산으로 남아있는 것과 같다. 중세에는 법률적 주체라는 추상적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특정의 광범위한 사람들에게까지 미치는 객관적 규범에 대한 관념은 구체적인 특권 및 자유의 설정과 혼동되어 일치되었다. 13세기에도 여전히 객관적 법과 주관적 법 또는 권능사이의 차이점에

7) 이상은 김효전, 「권리관념의 발전과 실제」, 『憲法學研究』第14卷 第4號 (2008), pp.109-110에서 인용
8) 헤겔, 이동춘 역, 『법의 철학』(전편), (서울: 박영사, 1983 중판), pp.137-146
9) Eugen Paschukanis, *Allgemeine Rechtslehre und Marxismus: Versuch einer Kritik der juristischen Grundbegriffe*, (Frankfurt: Verlag Neue Kritik, (1929)1966)/오이겐 파슈카니스, 박대원 역, 『법의 일반이론과 맑스주의』, (서울: 신서원, 2008), p.119
10) Eugen Paschukanis, 위 책, p.158

대한 어떠한 명백한 관념들의 흔적이 결코 발견되지 않는다. 황제와 제후들의 도시들에 대한 특권과 특허장 어디에서나 이 두 가지 개념들의 혼동이 발견된다. 어떤 일반적인 규칙들 또는 규범들을 제정하는 일반적인 형태는 어떤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집단적으로 어떤 법적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도시공기는 자유를 준다”라는 유명한 정식은 이러한 성격을 지녔었다. 법정에서의 결투의 폐지 역시 동일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러한 규정들과 함께 -완전히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서 - 예를 들어 제후 또는 황제의 산림의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들이 인용되었다. 주관적 계기와 객관적 계기의 이러한 동일한 혼동은 도시법에서 최초로 관찰되어진다. 도시의 법령들은 어떤 부분은 일반적 규정들이고 또 어떤 부분은 시민의 특정한 집단들에게 귀속하는 개개의 권리들 또는 특권들의 열거였다. 법은 부르주아적 관계들이 완전히 발전하였을 때에만 추상적 성격을 획득한다.¹¹⁾

서구의 ‘Right’와 동북아의 ‘權’에는 여전히 미묘한 차이가 발견된다. 權은 나뭇가지에 새가 날아와 앉아 출렁이면서 균형을 잡아가는 형상을 하고 있다. 즉 이해관계의 균형이 권리이다. 『예기』와 『한서』에 의하면 저울추를 의미하는데 추의 당김에서 근거한다.¹²⁾ 저울의 눈금이 기호인데 비해 추는 존재간의 관계이다. 김시습의 ‘갈고리의 뜻을 알아차리고, 눈금의 표식을 인정하지 말라’¹³⁾는 말이 이에 어울린다. 그러나 헤겔은 이와 반대로 표식을 강조한다. 표지야말로 점유취득 권리의 완성이라고 본 것이다.

표지에 의한 점유취득은 모든 점유취득 가운데서 가장 완전한 것이다...내가 물건을 취득하거나 혹은 형성하는 경우 그 궁극의 의미는 마찬가지로 표지이며 더구나 타인에 대한 표지이고 타인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며 내가 나의 의지를 그 물건 안에 넣어두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표지이다...인간이 모든 것에 표지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물건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야말로 인간은 바로 물건에 대한 자신의 지배권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¹⁴⁾

이처럼 서구-비서구의 권리개념은 일치하지 않았으며 일정기간 혼돈과 충돌기간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일정기간이란 서구와 비서구가 자본주의생산양식의 지배하에 들어가기까지의 기간이다. 그래서 ‘권리’란 무엇인가가 아닌 ‘자본주의적 권리’란 무엇인가라고 물어야 한다.

(2) 권리의 구조

1) 권리

천부인권이란 말이 있다. 하늘에 의해 주어진 권리가 있다고 치자. 하늘이 준 것이든 내가 주장해서 얻은 것이든 나의 권리의 존재란 남의 권리의 부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나의 권리와 남의 권리에 경계가 있어야 한다. 나의 권리의 한계가 곧 그 경계이다. **인정관계로 설명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나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는 측면을 권한이라고 하자. 영화 「마션」의 주**

11) Eugen Paschukanis, 위 책, p.120

12) 『한한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1997), p.1061

13) ‘領取鉤頭意 莫認定盤星’ (김시습, 『화엄일승법계도주병서』(1562), 동국대도서관소장)

14) 헤겔, 이동춘 역, 『법의 철학』(전편), (서울: 박영사, 1983 중판), pp.164-165

인공도 로빈슨크로스도 누구에게도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상태에 있었는데 왜 사람들에게 돌아오려 했는가? 침해받지도 않지만 인정받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인정받기위해선 권리의 일부를 나누어야 하고, 포기해야한다. 교환을 위해선 목숨을 건 비약을 해야 한다. 양도가능한 권리가 권한권限이다. 나의 권한은 나 아닌 것의 권리가기도 하다. 즉 권한은 남의 권리이다. 나의 권한에는 남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권리는 규정하는 것이고 규정은 한계를 정하는 것이기에 권리와 권한은 결국 규정하는 작용이다. 하늘이나 국가가 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즉 권리주체가 규정한 것이다. 권리가 표현되려면 권리를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 권리는 점유취득한 것이거나 사용을 통해 개조·변형된 것이거나 소유물로서 그 실체를 표현한다. 가치가 상품을 통해 표현되는 것과 같다. 권리의 행사인 '사용'은 소유의 근거이다. 사용은 크게 소비와 노동으로 구분된다. 소비는 권리있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권리를 소멸·부정하는 '사용'이고, 노동은 취득한 물건의 권리를 부정하여 새로운 권리의 내용을 만들어내는 '사용'이다.

사용과 소유의 관계는 실체와 우유적인 것,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힘과 그 외화의 관계와 같은 것이다. 즉 힘은 자신을 밖으로 나타내는 한에 있어서만 힘으로 존재하고, 경지는 수익이 있는 한에서만 경지인 것이다. 그러므로 경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경지자체의 소유자이다. 경작을 통해 생긴 밭고랑만 사용자의 것이고 땅 자체는 소유자의 것이라는 주장은 공허한 추상이라 하겠다. 소유란 본질적으로 자유롭고도 완전한 소유이다. 정도전도 이미 『정보위』에서 노동가치설을 주장했고¹⁵⁾ 1950년엔 농지개혁도 이루어 졌으나 왜 지금도 현실에선 소작제가 존재하는가? 권력이 법을 후퇴시키고 권리를 훔쳐갔기 때문이다. 사용의 전범위에 대한 권리와 추상적 소유를 구별하는 것은 공허한 오성이 행하는 바이다.¹⁶⁾ 사용은 곧 권리이다. 권리는 양도 불가능하다. 양도 불가능한 권리인데 권리의 다른 측면인 권한은 양도가능하다는 것에서부터 모순이 시작된다.

2) 권한

그러나 권리의 일부 즉 나의 특수한 육체적 및 정신적 기능과 활동능력에 대해 나는 그 개별적인 생산물과 시간상 제한된 사용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이 같은 제한에 따르면 나의 총체성 및 보편성에 대해 외면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에 의해 구체화된 나의 모든 시간 및 나의 생산물의 총체를 양도한다고하면 내가 그것들의 실제적인 것, 나의 보편적 활동 및 현실성, 즉 나의 인격성을 타인의 소유로 해버리는 것이 될 것이다. 노동자체, 노동전체는 양도불가능한 권리이지만, 전체노동 중 부분을 이루는 노동생산물, 노동력의 사용시간은 양도가능하다. 이 양도가능성, 교환가능성을 권한이라 하자. 권리가 질적인 규정이라 비교불가, 양도불가하다면, 권한은 비교가능한, 양도가능한 것이기에 양적인 규정이다. 양도가능성은 현실적 양도의 원인이다. 가능성은 현실성으로 전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전제한다. 능력이 없다면 가능성도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교환 가능성은 교환능력이다. 따라서 권한은 교환능력, 매대능력, 양도능력, 권리에서 그 일부를 분리해 낼 수 있는 분리능력이다.

15) 윌리엄 페티나 아담 스미스 훨씬 이전에 중동과 아시아에서 노동가치설은 등장했다. 중국의 재상 구준의 기록에서 지금까지 최초의 노동가치론이 발견되며, 중동의 이븐 칼둔은 그의 기념비적 저서인 『무갓디마(역사서설)』에서 노동가치설을 설파하고 있다. 조선에서는 정도전이 『경국대전』의 기초를 닦은 『정보위』에서 '황무지는 개간한 자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 헤겔, 이동춘 역, 『법의 철학』(전편), (서울: 박영사, 1983 중판), pp.168-169

물건의 취득이 권리의 긍정이라면 물건의 사용¹⁷⁾ -소비든, 개조든- 은 원래 물건상태의 부정이라고 할 수 있다. 취득에 의한 특수한 긍정에 대해 개조는 부정을 행함으로서 보편적 긍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획득한다. 노동과 개조를 통해 획득한 보편성에 의해 나만의 특수한 점유에서 모두의 소유로 발전할 교환가능성이 생겨난다. 일반교환에서 특수교환인 매매가능성을 가지라고 하자. 이 가치는 질적 권리에서 양적 권한으로 전화한다. 가치가 '매매가능성' '매매능력'이라고 한다면 사용가치는 곧 사용권, 사용점유권이어야 한다. 취득한 물건을 개조함으로써 생긴 소유권리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사용가치란 단어는 적절치 않다. 우연한 교환을 희망하거나 목적의식적 교환을 희망하거나 즉 교환관계를 전제한 사용권이라면 사용가치라기 보다는 '잠재교환가치'이고, 가치는 '교환가능가치'이다. **노동에 의해 생성된 사용가치인 한 교환잠재성을 이미 획득한 것이다. 순수사용가치들이라고 여겨지는 예술작품, 학위 같은 것들이 교환되는 것은 이런 이유이다.** 따라서 매매관계에서의 사용가치와 가치는 계약관계에서는 사용권과 교환권이 된다. 사용권은 권리를, 교환권은 권한을 이룬다. 권한이란 곧 교환권한이다.

3) 권한의 실제

욕구나 효용등 질적 성격의 사용권리와는 달리 교환권한은 교환, 매매, 계약을 전제하기에 비교기준, 공통성, 척도를 요구한다. 교환관계 속에 들어가 교환권한, 교환가능성, 교환능력으로 전화되기 위해서는 비교가능한 동일한 질이 전제되어야 한다. 질이 다르면 외적비교만으로는 공통의 교환척도를 찾을 수 없다. 그래야 양적비례만으로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외적반성에 의해 서로 상이한 질에서 동일한 질을 찾는다면 그것은 양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제3의 것이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동일한 것이 양자 중 어느 하나에 속하면 다른 하나와는 동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제3의 척도를 권한실체라고 하자. 우선 잠재교환가치인 사용권에서 이미 노동에 의한 물건의 개조를 통해 사용이 곧 소유로 전화되었기에 소유권리의 원천은 노동임을 알 수 있다. 권한실체는 다른 질의 물건자체가 아니라 이 물건들의 생산에 공통으로 투여된 노동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노동자체는 권리이지 교환가능한 권한은 아니다. 따라서 제3의 척도는 권리로서의 노동에서 권한으로서 구분된 노동력이다. 노동력의 양적표현은 노동시간이다. 이 점에서 가치와 권한의 실체는 동일하다.

4) 권한형태

권한이 교환가능성이고 교환능력이라면, 현실에서 실제로 그 능력이 발휘되어야 하고 교환능력의 발휘는 곧 교환이다. 능력이 가능성, 잠재성이라면 능력의 사용은 현실화이자 형태이다. 이처럼 권한이 현실에서 교환되기 위해선 구체적 형태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교환가능성은 현실로 표현될 수 있다. 여기서 **권한형태, 권한, 권리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예를들어 화폐, 화폐소유권, 화폐소유권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화폐소유권한의 발현이 화폐사용(교환수단,**

17) 내가 물건을 나의 것으로서 표시하는 경우에는 나의 것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빈사를 물건에 부여하고 그 특수적 성질에 대하여는 이에 간여하는 일없이 다만 그것을 승인하는 데 그친다. 그러나 내가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건을 나의 목적에 합치시키기 위하여 물건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의미에서 나는 물건의 특수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울타리에 의하여 토지를 나의 것이라고 표시함은 토지의 특수성을 변화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지만 이를 경작하여 사용하는 것은 그 특수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다. 헤겔, 이동춘 역, 『법의 철학』(전편), (서울: 박영사, 1983 중판), p.166

지불, 축적등)이라면 권리와 권한의 통일체가 화폐소유권자이다. 화폐소유권은 화폐의 사용으로 양도될 수 있는 권한이지만 화폐소유권자는 양도불가능한 권리의 주체이자 자신의 권리로 부터 권한을 분리하여 권한의 양도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이다. 노동력소유권의 발현이 노동력의 사용(자기노동, 고용노동)이라면, 양도불가능한 노동소유권리를 양도가능한 노동력 사용과 구분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노동자이다. 화폐소유권자를 양도할 수 없듯이 노동자도 양도할 수 없다. 화폐소유자와 노동자가 주체라면 화폐소유권과 노동력소유권은 실체, 화폐의 사용과 노동력의 사용은 우유의 관계가 된다. 즉 권한자체가 실체라면 권한의 사용인 교환, 양도는 우유성이다. 형태는 우유성으로 나타나지만 실체와의 관계를 갖는 한에서만 그렇다.

화폐소유자와 노동자가 결정에 의해 화폐와 노동력의 사용, 즉 화폐와 노동력의 교환이 이루어진다면 화폐와 노동력의 표현관계는 형태로 드러난다. 이를 권한형태라 하자. 예를들면 1만원과 1시간노동의 교환에서 1만원의 권한은 1시간노동의 형태로 표현된다. 이로서 만원에 담긴 권한형태는 1시간노동이 된다. 만원에 초점을 맞추면 만원은 능동적으로 1시간노동과 자기를 대립시켜 자신의 권한을 표현한다. 이를 능동권한형태라고 하자. 이에 대해 1시간노동은 만원의 권한이 등가로 교환되었음을 표현하는 등가물이 된다. 만원은 능동적으로 표현하고 1시간노동은 수동적으로 표현의 재료가 되어 준다. ‘표현하는’ 만원에 비해 ‘표현되는’ 1시간노동을 수동권한형태라고 하자.

여기서 능동권한형태인 1만원 즉, 화폐는 상품의 사용가치와 가치 중 사용가치를 제거한 가치 형태이다. 따라서 상품가치형태가 갖는 모순을 전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화폐소유권자는 여전히 권리와 권한을 통일하고 있다. 따라서 화폐소유권한을 양도하려면 소유권자의 권리를 포기·제거해야하는 상황에 처한다. 그러나 소유권한이 발생하는 것은 권리가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권리는 제거되어야 함과 동시에 보존되어야 한다. 모순이다. 이처럼 화폐권한형태는 이중의 모순을 갖고 있다.

맑스는 『자본론』1권에서 가치형태와 권력형태의 동형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암시를 남겼다.

아마포에 대하여 저고리가 가치를 표현하려면 아마포에게는 가치가 저고리의 형태를 취해야만 한다. 그것은 마치 개인 A가 개인 B에 대하여 “국왕”으로서 숭배를 받으려면, B의 눈에 국왕이 A의 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더욱이 “국왕”이 교체될 때마다 국왕의 용모와 머리털과 기타 여러가지가 변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¹⁸⁾

맑스는 이 비유에서 가치의 교환이 형태로 표현되어야 하듯 권력의 교환도 형태로 표현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왕은 원래 왕이어서 왕이 아니라 신하들이 왕으로 숭배하기에 왕이다. 신하들의 숭배가 사라지면 왕의 품모는 왕을 상징하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게 된다.

내안에 지배성도 있고 복종성도 있어서 나는 지배자가 될 수도 있고 피지배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나는 너와 동등하다. 내가 지배자로 선출될 수 있듯 너도 지배자로 선출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지배자가 되려면 상대방이 피지배자가 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나에겐 임금 옷을 입히고 그에겐 신하 옷을 입혀 지배-복종형태를 표현한다. 이때 지배성과 복종성의 통일체인 나를 지배자로 표현하려면 복종성은 제거해야만 한다. 복종성은 신하역할을 맡은 상대방이 표현해야하기 때문이다.

18) 칼 마르크스, 김수행 역, 『자본론』1(상), (서울, 비봉, 1999 개역11쇄), p.65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나는 나고 너는 너일 뿐 서로 무관심했다. 그런데 내안에 지배성과 복종성이 생긴 것은 나와 너 사이에 지배-복종관계, 즉 대립관계에 놓였기 때문이었다.¹⁹⁾ 그런데 이제 지배-복종관계를 표현하려면 복종성을 제거해야 한다. 그럼 복종없는 지배관계는 성립될 수 없으므로 지배-복종관계 자체가 붕괴된다. 지배형태를 표현하려면 복종성을 제거해야함과 동시에 복종성이 존립해야한다. 모순이다. 본질적 관계가 외적인 형태로 표현되어야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모순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다른 사례로 이를 설명해 보자.

1+1=2는 등가계산을 표현하기 위한 양극단으로 대립관계에 있다. 1과 2는 서로 무관심했으나 계산관계에 들어옴으로서 대립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양자는 |2|와의 관계이기도 하다. 즉 (1+1=|2|) = (2=|2|)이다. |2|와 2는 그 자체로는 동일하다. 그러나 1+1=2의 2와 |2|는 다르다. |2|는 순수한 본질이고 2는 계산관계에 편입되어 계산관계에서만 의미를 갖는 2이다. 즉 본질로부터 파생되고 새로이 규정된 본질규정이다. 그 점에서 |2|는 동일성을 2는 구별을 의미한다. 좌향은 부등성으로 반성·부정하여 정립된 존재이고 우향은 동등성으로 반성·부정하여 정립된 존재가 된다. 좌향은 타자를 포함하며 즉자대자적인 것으로 능동적인 것이 되고 우향은 동어반복으로, 수동적으로 자신을 고수할 뿐이다. 좌향의 (1+1=|2|)는 내적으로는 완결된 자립성을 갖추었다. 그러나 좌향의 (1+1=|2|)가 자신을 표현하려면 |2|는 배제되어야 한다. 이미 좌향내에서 모든 표현이 완결되어 우향을 통한 표현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래 외적형식으로 돌아가려면 |2|는 배제·배척·제거되어야 한다. 그러나 |2|가 제거되면 애초에 성립되었던 대립관계 자체가 붕괴된다. |2|는 존립해야하며 동시에 제거되어야 한다. 모순이다.

권리가 교환관계에 들어가자 권리성과 권한성의 관계로 구분된다. 권리라는 본질로부터 질적 관계인 권리성과 양적관계인 권한성이 구분되었다. 권리성은 사용권리를 의미하고 권한성은 교환권한을 의미한다. 하나는 질이고 하나는 양이므로 양자는 서로 무관하고 비교불가능하다. 그러나 권한성에 의해 교환이 이루어지려면 권한은 구체적 형태를 가져야 한다. 그것이 하나의 물건으로 표현된다면 이 물건에서 권리성은 양도불가능하므로 남고, 양도가능한 권한성만 따로 교환될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의 권한형태는 교환되는 대상의 권리+권한형태로 표현된다. 즉 비단의 권한형태는 등가로 교환된 한복의 현물로 표현된다. 권리성과 권한성이 서로를 표현해야하는 대립관계, 즉 권한관계에 들어온 것이다.

권리성과 권한성이 대립한다는 것은 권리성:권한성만이 아니라 이 둘의 본질인 권리자체와도 대립한다는 것이다{(권리성:권한성) : 권리}. 여기서 권한성은 권리와 관계를 포함하며 능동적인 면이 되고 권리성은 권리와 동어반복하며, 고수하며, 수동적인 면이 된다. 여기서 권한성이 권리성으로 자신을 표현하려면 권리를 배제·제거해야만 한다. 대립관계가 성립하려면 권리가

19) 마찬가지로 노랑과 파랑은 서로 무관한 색이지만 보색관계에 연관되는 순간 대립물이 된다. 그러나 보색은 색이란 본질에서 규정된 것이어서 보색의 대립과 다시 대립한다. 이를 기호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보색:-보색) : 색} 한발 더 나아가서 대립을 규정하면 상이성과 동일성의 통일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비유할 수 있다. +a에 대한 대립물이 -a라고 한다면 이 둘은 대립관계에 놓인 것이다. 그러나 이는 관념적인 가정일 뿐 객관적인 대립은 아니다. 그러나 +a:-a의 대립에 무관심한 |a|가 있다. (+a:-a)의 대립이라는 부정적인 것에 대해 |a|는 긍정적인 것으로 관계한다. 이로서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란 대립관계에 |a|가 포함된다{ (+a:-a) : |a| }. 여기서 |a| 는 +a와 -a의 동일성 즉 본질이고 +a와 -a는 본질인 |a|로부터 파생된 본질규정이다. 즉 본질규정끼리만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규정과 본질자체와도 대립하는 것이다. |a|가 본질로서 동일성이라면 +a, -a는 본질에서 파생된 본질규정으로서의 상이성이다. 이처럼 상이성과 동일성이 통일될 때만 대립이 정립되는 것이다.

권리성이나 권한성과 상호연관되어 있어야 하는데, 대립관계를 표현하려면 필연적으로 권리가 배제되어야 한다. 즉 상호연관 되어 있어야 하는 동시에 상호배제 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모순이다. 이 모순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권한성을 표현하기 위해 권리를 배제해야 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권리는 없고 권한성만을 가진 대상을 만들어 내면 어떨까? 물건이나 주체에서 권리와 권한성을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권한성만을 갖는 대상을 만들 수 있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권한성만을 갖는 대상물, 그것이 법이다. 계약서에서 법률까지 법률형태는 사용을 목적으로 한 권리가 제거된 형태이다. 법은 스스로는 권리를 갖지 않는다. 법률은 권한성만을 담지한 실체이다. 권리나 권리성으로부터 해방된 법률은 전국적, 전체적 교환능력을 갖는다. 이로서 우연적, 지역적 권한형태에서 발생하는 모순은 항시적, 전국적인 성격의 법률형태로 전가되어 더욱 발전하고 심화된다.

5) 법

권한은 나와 나 아닌 것이 상호관계이다. 나와 나 아닌 것은 달리 말하면 나와 전체이고, 나와 전체는 곧 나와 무한이고, 나와 나를 뺀 전체의 합이다. 권한은 나와 전체 사이에 형성된다. 너 혹은 그는 나 아닌 것 중의 일부이다. 즉 전체의 부분이다. 그러나 나는 나 아닌 것과 관계 맺고 상대할 수는 없다. 나는 너나 그하고만 상대한다. 그러나 **대립, 모순관계에 포함되는 순간** 너와 그는 관계전체를 반영하는 대립물이다. 나와 너의 권한관계는 나와 전체간의 법률관계로 발전한다. 계약을 위반하는 것은 법인의 권리이다. 그러나 계약을 통해 발생한 법률은 나의 위반에 대해 처벌하거나 강제할 수 있게 된다. 계약위반은 공동의지에 함축된 보편적 권력인 “강제력”(Zwang)에 대립하는 개별자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계약위반이나 범죄는 헤겔에 따르면 단지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 일반의지의 힘의 등장을 위한 필연적인 현상이다. 헤겔에 의하면 이 단계에서 개별자로서의 범죄자는 이미 사회적으로 인정된 공동의지를 훼손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의식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가 소홀히 해왔던 이 공동의지는 바로 자신이 형성했던 것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²⁰⁾ 자본주의사회의 특징은 바로 전체권한이 사적권한들로부터 분리되고 그것들과 대립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 속에서 전체권한은 사적권한형태, 즉 법형태를 취한다.²¹⁾ 권한형태의 정점에서

20) 헤겔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사회적인 현실에서 범죄현상의 대두에 의해 평소에는 가려져 있던 공동의, 즉 일반의지의 권력이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데 있다. 헤겔의 범죄와 처벌에 관한 연구는 Felix Herzog, *Prävention des Unrechts oder Manifestation des Rechts. Bausteine zur Überwindung des heteronom-präventiven Denkens in der Strafrechtstheorie der Moderne*, (Frankfurt/M., Bern, Wien, 1987) 과 Kurt Seelmann, *Anerkennungsverlust und Selbstsubsumtion Hegels Strafrechtstheorien*, (Freiburg, München, 1995)를 참조; 장명학, 「헤겔의 변증법적 권력개념」, 『철학사상』12, (서울대철학사상연구소, 2001.6), pp.290-291

21) 예를 들어 선거권에 대한 Kotljarewski의 고찰을 참조하시오: “입헌주의에서는 선거인은 헌법에 표현된 국가기구에 의해 자신에게 부과된 일정한 기능을 실현한다. 그러나 법치국가의 관점에서 보면 선거인에게 단지 기능만을 양도하고 그 기능과 결합된 권리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것은 부르주아적 소유를 사회적 기능으로 단순히 전환하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하다는 것을 부연하고자 한다. Kotljarewski는 더 나아가 만일 Laband를 따라서 선거인의 주관적인 권능의 요소를 부정한다면 “대표자의 피선거권 자격은 법적 의미를 모두 상실하고 기술과 합목적성의 문제가 남는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강조한다. 여기서도 우리는 다시 목적과 이익의 통일을 기초로 하는 기술적 합목적성과 사적 이익의 개별화와 대립 위에 구축된 법률적 모순을 발견한다. 끝으로 대표제도는 선거인의 권리의 사법적 또는 사법적·행정적 보호의 도입을 통해 완전히 법률적 성격을 획득한다. 사법과정과 당사자의 투쟁은 여기서도 법률적 상부구조의 본질적인 요소로 나타난다[Kotljarewski, 『

법이 탄생하는 것이다. 법은 권한형태라는 사적, 우연적, 지역적 한계를 넘어 전영토, 전지구 차원의 일반성을 획득하게 된다. 권한능력의 축적에 의해 초국가권력이 성립된다면 당연히 초국법, 혹은 세계법 역시 성립할 것이다. 초국가를 거쳐 무국가에 이른다면 이때 가서야 법률 역시 소멸할 것이다. 이로써 법주체인 법인도 개인에서 단체와 국가로 발전한다. 인격체는 권리능력과 권한능력을 갖지만 법인은 오직 권한능력만을 갖는다. 그러나 법인이 개인일 때는 인격체로서의 개인과 통일되어 있어서 권리능력까지 갖는 것으로 착각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개인으로서 발언했을 때 개인 노무현과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논쟁이 일어난 것은 이런 이유이다.

법주체와 권한주체의 차이를 세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법주체와 권한주체가 서로 다른 경우, 즉 서로 다른 법인과 서로 다른 개인으로 구분되는 경우와 둘째, 법주체는 같으나 권한주체가 다른 경우, 즉 법주체는 국가이고 권한주체는 개인인 경우와 셋째, 법주체와 권한주체가 동일한 경우, 즉 법주체도 국가이고 권한주체도 국가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6) 권력

인격체인 개인의 권력은 권리능력과 권한능력의 통일이지만 법인의 권력은 오직 권한능력이다. 법인의 권력은 양도가능하지만 개인의 권력은 양도불가능한 권리능력을 갖는다. 개인은 자신의 권한을 양도하여 법인의 권력을 만들 수 있는 만큼 그 권한을 회수하여 법인의 권력을 폐기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은 개인의 권력을 폐기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가법인의 권력은 개인의 권력을 폐기할 수 있게 되었다. 위임받은 자가 위임한자를 지배하는 전도현상이 자본주의권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권한형태의 모순으로부터 법률형태가 출현했지만 이 둘은 질적으로 다른 관계에 기반을 갖게 된다. 서로 다른 질의 관계끼리 관계를 맺는, 관계의 관계인, 순환관계에 돌입하면 모순은 더욱 전가되고 전가된 모순은 심화된다. 권한과 법의 순환관계를 통해 권한은 전혀 다른 단계의 권한형태인 권력으로 창출된다.

1. 권한의 저울: (A-L)²²⁾

권한형태로부터 법형태가 출현했지만 법이 등장하자마자 권한형태의 척도가 된다. 이제 권한은 법에 의해 규정된다. 법은 권한을 규정하며, 그 규정은 곧 한계를 의미한다. 즉 법은 권한의 표현이면서 권한의 한계이다. 또한 법은 권한과 함께 양을 표현한다. 예를 들면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형량으로 계량되어야 한다.

2. 권한의 시장: (* A¹ - L - A²)

여기서 A¹와 A²는 서로 다른 대상이다. 이를 외형적으로 관찰해보면 법은 서로 다른 두 권한주체를 연결한다. 그리하여 권한은 법을 통해 광범한 시장을 갖게 된다. 또한 여기서는 권한의 위임에 의해 법이 성립되었으나 법이 권한을 위임한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러한 전도현상은 법의 물신성을 강화시킨다.

Macht und Recht』, (모스크바, 1915), p.25 참조] 국법은 일반적으로 왕과 의회, 상원과 하원, 정부와 인민의회와 같은 상호간의 투쟁하는 세력들의 등장과 함께 비로소 헌법으로서 법률적 대상이 된다. 동일한 것이 행정법에도 적용된다. 행정법의 법률적 내용은 한편으로는 주민의 권리의 보장만을, 다른 한편으로는 관료적 계층제의 대표자의 권리의 보장만을 포함한다. 그밖에 행정법 또는 예전에 명명되었던 경찰법은 기술적 규칙, 정치적 처방 등등의 잡다한 혼합물이다.

22) A:권한(Authority), L:법(Law), P:권력(Power)

그러나 내재적 모순관계에서 관찰해보면 첫 번째 계기인 $A^1 - L$ 에서는 권한형태가 능동형태가 되고 법이 수동형태가 된다. 즉 권한형태는 법형태를 통해 권한능력을 표현하고 법형태는 권한능력을 표현하는 재료가 된다. 권한은 권리를 포기한 순수한 권한형태인 법을 통해 권리의 형태로만 표현되는 권한형태의 모순을 해결한다. 즉 권리를 제거해야하나 권리를 제거할 수 없는 권한형태의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은 권리없는 권한형태, 권리로부터 해방된 그리하여 권한형태를 대상으로 하는 권한형태, 즉 법과 교환됨으로써 해결한다. 두 번째 계기인 $L - A^2$ 에서 법형태가 능동형태가 되고 권한형태가 수동형태가 된다. 법형태는 권한형태를 통해 자기의 능력을 표현하고 권한형태는 법형태의 능력을 표현하는 재료가 된다. 법형태는 제거할 모순, 즉 권리형태를 간직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가할 모순이 없다. 대신 이번엔 권리없는 법형태가 자신의 권한을 실현할 길이 없는 난관에 봉착한다. 그리하여 다시 법은 자기를 표현해 줄 다른 대상, 즉 A^1 과는 다른 A^2 을 찾아야 한다. 선거법의 법인인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할 사람을 찾기 위해 투표참여캠페인을 해야 하는 것과 같다. 여기에서 새로운 권한주체, 즉 권리와 권한의 통일체가 요청된다. 이 순환의 전체결과는 서로 다른 권한주체의 연관, 즉 권한관계망의 확산이다. 법은 하나와 전체의 관계를 매개함으로써 권한의 시장을 전국화 한다. 개인간의 계약은 지역적·신분적 한계를 넘어 전국적으로 법률화 된다. 법은 권한교환을 위한 시장으로서 역할 한다. 계약형태가 국법형태로 확장되면서 권한능력이 전체화 될 수 있는 수단과 조건을 확대해 간다. 이는 권한관계에 포함된 모순이 확장되는 것이기도 하다. 불평등하고, 부당한 두 형태인 법과 권한, 법인과 개인끼리의 관계는 하나의 순환관계에 들어옴으로써 모순을 확장·심화시킨다. 기호에 불과했던 법은 현실의 권한으로 실현됨으로써 원래부터 살아있는 권한형태인 것처럼 둔갑한다. 법의 물신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편 법은 권한에 대한 통제와 지배를 통해서도 강화된다. 법인에 의한 개인의 지배이다. 어떠한 권한도 법의 한도, 법의 척도를 넘지 못해야 한다. 그러나 권한형태의 기호에 불과했던 법이 모든 권한형태를 지배하기 시작한다. 사적 권한영역이었던 개인 간의 복수나 처벌도 법의 지배를 받는다. 이 강제가 법에 의한 지배, 법치인 것이다.

3. 권력의 공장: (* $L^1 - A - L^2$)

여기서 L^1 과 L^2 는 같은 대상이다. 이 순환공식의 외형적결과는 L(법)의 양적증가이다. 원래의 법능력보다 초과된 잉여능력이 창조된다. 이를 내재적 모순관계에서 살펴보면 이 순환관계의 첫 번째 계기인 $L^1 - A$ 에서 법은 능동권한형태를, 권한은 수동권한형태를 취한다. 법형태는 권한형태를 통해 자기의 능력을 표현하고 권한형태는 법형태의 능력을 표현하는 재료가 된다. 즉 법은 권한의 실행으로 표현된다. 권한은 교환가능성일 뿐이므로 권한의 실행은 권리로 표현된다. 법으로부터 위임·양도 받은 권한능력은 권리+권한형태로 표현된다.

권리가 제거된 권한인, 법은 자신을 실현할 수단으로 권리가 포함된 권한을 선택하고 실현한다. 그리고 이 권한은 자신 안에 통일된 권리와외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권한이 아닌 법과 교환된다. 그 결과 법능력은 원래의 자신을 실현하고 실현된 자신의 능력을 다시 원래의 자신과 교환한다. 즉 자기에게 복귀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법능력의 양적확대이다. 이같은 법능력의 양적확대는 법의 담지자인 법인의 권한능력강화로 나타난다. 법은 동일한데 법인의 능력은 달라졌다. 이로부터 법인의 잉여권한이 창조된 것이다.

법인, 즉 법주체가 국가인 경우, 국가는 또한 권한주체이기도 하다. 법형태와 권한형태는 바뀌지만 주체는 동일하다. 자기의 법능력을 자기의 권한능력에 양도하고 자기의 권한능력을 다시 법능력으로 양도한다. 여기에서 잉여로 창출된 자신의 권한을 다시 법형태안에 실현시킬 수

있게 된다. 모두의 권한으로부터 위임된 법이 한사람·한집단·국가에게 축적되면서 법인의 권한 능력은 법을 초과하여 창조된다.

법을 통해 새롭게 창출되는 잉여의 권한은 종국에는 국가의 권력, 주권으로 성장한다. 이로써 합법적 폭력이란 모순이 가능해진다. 폭력은 법의 위반이지만 국법을 통하면 합법화된다. 법에 의해 위임받은 권한은 법을 초월하여 법밖에 있을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한다. 등가교환 속에 있으면서 잉여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요인은 합법적 착취에 있듯이 잉여권한 역시 합법의 수단을 통해서만 달성된다. 잉여권한이 권력으로 탄생한다. 법의 순환체계에 포섭되지 않는 법의 예외상태, 즉 법 밖에서의 권력은 법의 지배에서 벗어나 있다. 권력은 본질적으로 법 밖에 있다. 형법의 상위단계인 헌법을 통해 국가는 비로소 구체적 현실성을 지니게 되는데,²³⁾ 제헌권력은 법의 예외문제를 잘 보여준다. 헌법이 있기 전 헌법을 만든 헌법제정 주체인 주권인민²⁴⁾은 아직 법이 부재한 상태에서 헌법을 제정하므로 법의 합법성이 부여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주권인민은 법 밖에서 법을 제정하는 권력이다.²⁵⁾ 인민의 제헌권력이란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는, 그러나 그 피조물에 전적으로 복속되지 않는 조물주(demiurge)의 세속화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²⁶⁾ 프랑스혁명의 이론가 시에예스(E. J. Sieyès)의 표현에 따르면 “인민은 헌법에 복속되지 않는다고 보다는, 그럴 수도 그래서 안 되는 것이다.”²⁷⁾

헌법을 만든 제헌권력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의해 만들어진 입헌권력²⁸⁾도 법 밖에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단 입헌권력은 헌법이 수립된 뒤이므로 법 안에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칼 슈미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권자는 법밖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법안에 있는 자로서, 즉 헌법을 완전히 효력정지 시킬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Entscheiden)하는 자리에 있는 자이다.” 헌법 밖에 있는 ‘예외상태’는 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 오직 국가권력의 담당자, 즉 주권자만이 예외상태를 결정함으로써 법의 경계를 규정한다.²⁹⁾ 슈미트의 사상은 군주권은 “최종적인 의지결정을 지닌 권력”이라는 헤겔의 정의와 유사성을 갖는다.³⁰⁾ 이같은 법 밖의

23) 정미라, 『헤겔에 있어서 국가의 이념』, 『대동철학』22집, (대동철학회, 2003.9), p.16

24) 주권인민은 대부분 국가의 헌법전문에 주어로 등장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 국민”으로, 미국헌법에는 “우리 합중국 인민”(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으로 등장한다. 1790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3조는 “모든 주권은 본질적으로 민족(nation)에게 귀속된다”고 하여 인민이 아닌 민족을 제한의 주체로 삼았다.

25) 미국의 “우리 합중국 인민”을 예로 들어 보자. 1787년 9월 8일 <헌법집필위원회>(Committee of Style)가 제출한 전문초안은 “WE THE PEOPLE of the States of (각13개 주 이름)”으로 제헌권력의 주체를 규정하고 있었다.(Raymond B. Marcin, “‘Posterity’ in the Preamble and a Positivist Pro-Life Position.” *American Journal of Jurisprudence* (38 Am. J. Juris. 273), p.284) 미국헌법제정 이전에는 각 주 단위의 인민만 존재하였지, 고유명사로서의 “합중국인민”은 정치적으로도 실정법상으로도 부재하였던 것이다. 이는 헌정위기 또는 중단상황에서 “미합중국 인민”이 존재할 수 있는가하는 현실적인 질문으로 이어지며, 미국 헌정사에서 그에 대한 대답은 결국 법리가 아닌 (남북)전쟁을 통해 결정되어진다.(Akhil Reed Amar, *America’s Constitution: A Biography*. (Random House, 2005), pp.21-39); 김성호, 『헌법제정의 정치철학-주권인민의 정체성과 인민주권의 정당성』, 『한국정치학회보』42집3호, (한국정치학회, 2008.9), p.8참조

26) Ernst Wolfgang Bökenförde, *Staat, Verfassung, Demokratie: Studien zur Verfassungstheorie und zum Verfassungsrecht*, (Suhrkamp Verlag, 1991), pp.90-112; 김성호, 『헌법제정의 정치철학-주권인민의 정체성과 인민주권의 정당성』, 『한국정치학회보』42집3호, (한국정치학회, 2008.9), p.8

27) Emmanuel-Joseph Sieyès, *What Is the Third Estate?* (1789), (Pall Mall, 1963), p.126

28) 허영은 전자를 “헌법제정권력”, “창조한 권력” 또는 “형성하는 권력”으로, 후자를 “창조된 권력” 또는 “형성된 권력”으로 번역하고 있다.(허영, 『헌법이론과 헌법』(上), (서울: 박영사, 1988), p.49)

29) Carl Schmitt, *Politische Theologie: Vier Kapitel zur Lehre von der Souveränität* 2판, (Berlin: Duncker & Humblot, 1934)/김항 역, 『정치신학: 주권론에 관한 네 개의 장』, (서울: 그린비, 2010), pp.18,22,25,16참조

권력은 개별권리의 주체가 공동권력으로 동의한 적이 없는 잉여권한, 초과권한이다. 사형집행권이란 시민사회의 국가 안에서는 최고 권력이지만, “사면권”(Begnadigungsrecht)이라는 초법적인 권한, 즉 권력 앞에서는 무력하다고 하겠다.³¹⁾ 법인이 개인이 되었을 때 인격체와 미분화되어 권한형태만이 아니라 권리까지 가진 것으로 오해된다. 인격체로서의 권리는 스스로 그 사용을 결심함으로써 실현되기에 위임받은 권한과 별개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한다. 주권자는 법의 밖에서 권력행사를 결정하고, 그것을 다시 법을 통해 합법화시킨다. 법으로 합법화되지 않으면 주권자는 헌법위반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력은 법보다 한발 앞서 나감으로써 법 밖에 선다.

계엄권의 예를 들어보자. 이승만이 제주4.3을 진압하기 위해 1948년 계엄령을 선포하지만 당시에는 계엄법이 없었으므로 이는 범위반임이 명백했다. 그러나 계엄령은 하달되었고 군대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일어났다. 뒤늦게 문제될 것을 의식하여 계엄법이 만들어졌다. 이는 소급입법으로 명백한 불법이다. 그러나 이승만의 불법은 단 한번도 탄핵되지 않았다. 계엄법이 만들어진 후, 대통령의 계엄권은 합법화되었다. 법 밖의 권력이 법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현재는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독단을 법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헌법77조 5항에 의해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따라야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시 탄핵된다. 국회의 여소야대 상황에서 계엄이란 선택은 쉽지 않은 것임에 분명하다. 이제 계엄권은 법안에 갇힌 것이다. 그러나 권력은 다시 한 번 법의 지배를 허물 수 있는 틈새를 법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 작은 틈새면 충분히 권력은 법 밖에 설 수 있게 된다. 계엄법 11조 2항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평시로 회복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만약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지연시키면 계엄은 지속된다. 즉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은 이 미세조항 하나로 간단히 무력화된다. 이 조항하나로 대통령은 다시 법 밖에서 권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결정권을 확보한다. 면밀히 보면 계엄법 11조 2항은 헌법77조 5항과 충돌하는 것이다. 이는 헌법과 계엄법상의 ‘지체없이 해제하여야 한다’는 이행강제력의 퇴색뿐만 아니라, 국회의 의사실현을 국무회의의 심의에 기속(羈束)시키는 것으로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³²⁾ 권력은 법의 지배를 무력화하고 권력의 이해를 관철시킬 수 있는 입법능력을 언제나 가지고 있는 것이다. 법으로 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심지어 법률 전체가 법률로부터 예외인 것처럼 파악되기도 한다.³³⁾ 그럼

30) G. W. F. Hegel,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Frankfurt a. M., 1980), p.273; 정미라, 「마르크스 『헤겔 국법론 비판』-국가와 시민사회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철학논집』제48집, (서강대학교철학연구소, 2017.2), p.187. ‘결정’에 대해 헤겔과 슈미트는 다른 비중으로 쓰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겠다. 헤겔의 결정은 형식적인 것이다. 헤겔에 의하면 군주의 결정은 결정된다는 것만이 중요하지, 어떻게 결정되는 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슈미트의 ‘결정’은 그만의 독창적인 개념으로서 주권의 본질은 강제나 지배의 독점이 아니라 결정의 독점에 있다고 할 정도로 강한 의미부여를 한다.

31) 『법철학』에서는 시민사회에서 국가로의 이행이 ‘직업단체’(Korporation)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예나의 실재철학』에서의 이행은 바로 이 ‘사면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사면권은 국가원수에 게만 귀속되는 고유한 권한이다. 따라서 이 권한은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기능하는 민법적, 형사법적 사법제도의 영역을 초월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Igor Primoratz, *Banquos Geist: Hegels Theorie der Strafe*, in Hegel Studien. Beiheft 29.(Bonn. 1986), p.61; 장명학, 「헤겔의 변증법적 권력개념」, 『철학사상』12, (서울대철학사상연구소, 2001.6), p.294인용

32) 이와 함께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계엄선포시에 미리 계엄에 대한 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의 도래로 자동으로 계엄이 해제되도록 하는 입법적 보완이 있어야 계엄해제와 관련한 다양한 우려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김도협, 「계엄제도와 그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세계헌법연구』제16권2호, (2010), pp.32-33

으로써 권력을 재생산하고 축적시킬 수 있는 체계도 바로 법인 것이다.³⁴⁾ 계급지배를 위한 조직으로서의 그리고 대외전쟁들을 지휘하기 위한 조직으로서의 국가는 법적 해석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는 그것을 결코 허용치 않는다. 그것은 단지 명백한 합목적성의 원칙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소위 국가이성이 지배하는 영역이다. 이와는 반대로 시장교환의 보증인으로서의 권력은 법의 용어로 표현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법으로 그것도 단지 법으로, 즉 추상적·객관적인 규범과 완전히 일체가 되는 것으로 묘사될 수도 있다.³⁵⁾

힘의 요인으로서의 국가는 부르주아지가 ‘법치국가라는 자신의 이론과 실천에서 실행해야만 했던 교정이다. 부르주아지의 지배가 동요하면 할수록 이 교정은 더욱더 타협적으로 되었고, ‘법치국가’는 더욱더 빨리 형체가 없는 환영으로 변환되어 최후에는 계급투쟁의 극단적인 격화가 법치국가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 던지고 다른 계급에 대한 한 계급의 조직화된 강제력으로서의 국가권력의 본질을 폭로하도록 부르주아지를 강요하였다.³⁶⁾ 히틀러 나치즘의 이론가였던 칼 슈미트의 주권론은 법치국가의 가면을 벗긴 사례라 할 수 있다.

4. 권력의 은행: (P¹ - P²)

권력은 더 이상 법을 통하지 않고 권력 스스로 권력을 생산한다. 법속으로 들어와 합법성을 갖추려는 예외권력이 있는가 하면 한편의 권력은 이제 더 이상 법이란 매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권력으로 남는다. 이들 권력은 법의 경계를 정해 법이 침범할 수 없는, 권력이 한 없이 자유로운 지상천국을 만든다. 최근 우리에게 관찰된 권력의 은행은 모든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이다. 국민의 질타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특활비는 법밖에 있다. 개명한 법치국가에서도 통치자금, 통치행위의 이름으로 법이 침범하지 못하는 영역은 계속 창조된다. 법을 초월한 국가권력은 [권력¹- 권력²]의 순환을 갖는다.³⁷⁾ 애초 인민이 위임했던 권리는 이 단계에서는 소외된

33) 마르크스는 라인주의 삼림벌채 문제를 다루며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사람들은 심지어 법률 전체가 법률로부터의 예외라고 파악하였으며,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예외적인 규정이 법률에서 허용 가능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어떤 하나의 법률로부터의 예외(eine Exzeption von einem Gesetz)가 아니라 법률로부터의 예외(eine Exzeption von Gesetz)가 다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입법자가 있고 있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우리의 주의회의 활동은 때맞추어 약삭빠르게 끼어들고 고치고 보충한다. 그리하여 주의회 활동은 법이 사적 이해에게 법률을 제정하게 했던 곳에서 사적이해로 하여금 법에게 법률을 제정하게끔 한다.’(마르크스, 전태국 외 공역, 『마르크스의 초기 저작-비판과 언론』, (부산: 열음사, 1996), p.237,240,241)

34) 이시우, 「국가와 항쟁」, 『‘국가란 무엇인가’ 심포지엄자료집』, (복합문화공간에무, 2017.5.25)

35) (3) 이 경우 객관적인 규범은 규범에 예측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확신으로 파악된다. 법은 법률적 교제에서 함께 존재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확신이다. 따라서 법적 상태의 발생은 구속력을 가지고 집행하는 일반적인 확신의 발생이다.[Puchta, 『Vorlesungen über das heutige römische Recht』, (제1권, 라이프치히, 1847/1848)]이 정식은 그것의 외관상 보편성이라는 점에서 실제로는 단지 시장 교제 조건의 관념적인 반영일 수밖에 없다. 시장교제 없이 이 정식은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 스파르타(Sparta)에서 노예들의 법적지위는 그들의 구속력 있는 일반적인 확신의 결과라고 주장하려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Gumplowicz, 『Rechtsstaat und Sozialismus』 참조]

36) Eugen Paschukanis, 위 책, p.160

37) 이는 마치 생산과정을 매개로 축적되는 생산자본 [자본¹-생산-자본²]이, 생산의 매개없이 이자를 낳는 자본, 돈이 돈을 낳는 자본 [자본¹-자본²]으로 발전하는 것과 같다. 자본주의국가의 법은 권력과의 관계에서 4가지 계기를 통해 속성이 전환되며 국가권력을 완성한다. 첫 번째, 법은 권력의 척도, 권력의 저울이다. 두 번째 법은 권력의 척도라는 속성으로부터 수많은 권력을 매개하는 수단, 즉 지배수단으로 발전한다. 이는 마치 권력을 유통하는 시장과 같다. 세 번째, 법의 순환체계 밖에 있던 권력이 법체계 안으로 들어오면서 법은 권력을 생산, 축적하는 공장으로서 발전한다. 네 번째, 권력은 법을 더 이상 매개하지 않고도 법을 초월하여 스스로를 재생산하며 독립한다. 이로서 권력으로서의 권력을 만들어내는 권력의 은행이 된다. 이 단계에서 국가로서의 국가가 완성된다.(앞의 논의는 졸저, 「국가와 항쟁」, 『‘국가란 무엇인가’ 심포지엄자료집』, (복합문화공간에무, 2017.5.25)에서 재인용하였다.)

흔적조차 찾아볼 수도 없게 되고 물신화된다. 이제 권력은 권력이어서 권력이다. 권력물신성으로 권력은 법과 제도를 통하지 않고도 권력을 자체 생산한다.

7) 국가주권

이제 자기증식하는 권력은 영토 안에 존재하는 모든 권한관계와 권한형태를 결합시키며 자신을 재생산한다. 경제권력, 정치권력, 문화권력등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정치권력과 공간권력에 대해서만 살펴보자.

1. 정치권력

법률에 의해 정치권력을 창출하는 권한형태는 국민투표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기표된 투표용지이다. 기표(記票)를 통해 주체는 기표(記表)로 전환된다. 표현될 수 없는 주체는 표에 기입함으로써 권한행사와 동시에 소외된다. 소외된 권한이 기표이다.

근대정치에서 상품의 교환에 해당하는 관계는 개인 간의 '동의'이다. 모든 정당한 권한은 그 권한이 행사될 대상의 '동의'에서 나온다는 원칙 - 다른 말로 하면 개개인은 그들이 동의했었던 바에 의해서만 의무를 갖는다는 원칙 - 아래에서 근대의 세 혁명은 이루어졌다. 시민사회가 성립되기 이전 권력은 약탈이나 증여등의 형식으로 획득되었다. 사적소유와 상품교환에 기초한 시민사회의 탄생은 권리의 탄생도 동반했으므로 약탈은 더 이상 권력획득의 수단이 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동의'에 기초한 자기 권한의 위임이다. 근대국가의 대의제도는 '동의'를 기반으로 추천제에서 선거제로 발전된다. 추천에 기초한 체계에서는 사람들이 추천을 사용하기로 한 때 합의를 했더라도 선출된 사람은 그가 권한을 행사할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의지를 통해 권좌에 앉은 것이 아니다. 반면 선거체제에서는 시민의 동의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사람들은 선출방법에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개별적 결과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이다. 만약 동의에 기반한 권력과 정치적 구속력을 세우는 것이 그 목적이라면 분명히 선거는 추천보다 훨씬 더 확실한 방법이다. 정치적 정당성과 구속의 근거에 대한 이러한 견해가 추천의 몰락과 선거의 승리를 가져왔다는 것을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³⁸⁾ 따라서 선거제의 핵심은 대의제가 아니라 지배에의 자발적 복종에 있다. 동의란 자기권한의 포기과 공동권력에의 구속, 복종을 의미한다. 자발적동의란 자발적복종의 다른 이름이다. 동의하는 순간 자기결정을 지배하기는커녕 지배당하는 소외가 발생한다.³⁹⁾ 주체가 기표로 대체되고, 주체의 결단이 제도에의 욕망으로 대체되는 것이 소외이다. 권력의 수단은 강제와 동의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동의가 내면화된 강제라는 점에서 권력의 본질은 오직 강제이다. 즉 동의 자체가 권한의 배제이며, 포기된 권한이다. 투표하는 순간만 시민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주권자이고, 투표가 끝나는 순간 주권자는 그 투표에 의해 권한으로부터 배제된다. 임금노동자가 자본가에게 잉여가치를 소유하게 해주고, 자신은 소유를 상실하듯이, 선거의 결과 민중은 지배자에게 자

38) Bernard Manin, *The Principles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버나드 마닝, 곽준혁 역, 『선거는 민주적인가-현대대의민주주의원칙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울: 후마니타스, 2004), p.113참조

39) 소외된 권력관계는 권력의식을 만들고, 그런 권력의식이 진리나 법칙으로서 사람들에게 강요된다. "예를 들어 왕권과 귀족 및 부르주아가 서로 지배권을 둘러싸고 다투고 있고 그리하여 지배권이 나눠져 있는 시대나 국가에서는 이른바 권력분립이라는 학설이 지배적인 사상으로 등장하여 '영원한 법칙'으로서 표명될 것이다." (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박재희 역, 『독일이데올로기』1, (서울: 청년사, 1988), p.83)

신의 권한을 이양하며 그 즉시 상실한다.

화폐와 투표는 권력의 척도란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다. 선거에서 불법인 대표행위가 발생하는 것도 이와 연관된다. 물물교환에서 화폐교환으로의 이행이 상품교환을 우연적인 것에서 필연적인 것으로 만들었듯이 추천제에서 선거제로의 이행도 권한이양을 우연적인 것에서 필연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권한은 이제 양으로, 숫자로도 전환된다. 투표는 권한의 집중을 지향한다. 결선투표 등은 집요한 권한이양장치이며 자발적 동의와 자발적 복종을 강제하는 장치이다. 이 양을 통해 집중된 권한은 축적을 이루고 이는 영토범위에서 주권이 된다.

2. 공간권력

주권은 공간의 지배를 통해 행사된다. 전국적 차원의 공간지배는 영토로 조직화 된다. 영토의 뇌에 해당하는 수도, 수도의 중심인 청와대는 주권의 핵이다. 이 핵을 떠받치는 권력기관들은 제도와 법을 집행한다. 공간을 통제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권력을 명확하게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것(articulation)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배권력은 사람, 정보, 사물들을 제 위치에(in place)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시위자들은 반대로 사람, 정보, 사물들이 제 위치를 벗어나(out of place)있도록 만들고자 노력한다.⁴⁰⁾ 다시 말해, 특정 공간에서 사람들이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그 행동은 저항으로 해석된다.⁴¹⁾

대통령 권력행사의 정당성을 묻는 경우 서울이란 공간의 권력관계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재구성된다. 청와대를 향한 공간통제를 규율하는 최종지휘자는 경찰이 아니라 대통령경호실장이다. 대통령 경호의 경우 3중경호의 원칙에 따라 1선(안전구역)에서는 대통령경호실이 담당하고, 2선(경비구역)은 경찰이, 3선(경계구역)은 군이 담당하고 있다. 특히 경찰에서는 101경비단, 22경찰경호대, 군에서는 33헌병대, 55경비대 조직을 통하여 대통령 경호직무를 수행하고 있다.⁴²⁾ 3중 경호의 원칙은 경호대상자가 위치한 장소로부터 1선(내부, 안전구역), 2선(내곽, 경비구역), 3선(외곽, 경계구역)으로 구분하여 구역별로 차등화 된 경호조치를 취함으로써 경호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개념이다. 1선, 2선, 3선의 거리 개념은 행사장의 특징이나 지형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선은 권총 등의 유효사거리를 고려한 건물 내부, 2선은 소총 등의 유효사거리를 고려한 울타리 내곽, 3선은 소구경 곡사화기의 유효사거리를 고려한 외곽의 개념으로 설정한다.⁴³⁾

이같은 지배통제공간의 개념이 실제 적용된 사례 중의 하나가 2015년 민중총궐기이다. 백남기 청문회에서 폭로된 서울지방경찰청의 '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경비계획'문서에 따르면 해당 지역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의한 경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이다.⁴⁴⁾ 법원에서 경찰은 집시법만을 내세워 행진구간을 다툼으로서 대통령경호실법의 경호구역을 은폐해왔다.

40) S. Jensen, "The streets of beograd: Urban space and protest identities in Serbia", *Political Geography* 20(1), (2001), p.39; 정희선, 「서울시 집회시위 발생 공간의 특성과 변화: 1990~2003년」, 『국토지리학회지』38권4호, (2004), p.449

41) 정희선, 「서울시 집회시위 발생 공간의 특성과 변화: 1990~2003년」, 『국토지리학회지』38권4호, (2004), p.449

42) 임준태, 『비교경호제도론』, (서울: 백산출판사, 2009)

43) 이두석, 『경호학개론』, (진영사, 2011)

44) 조윤희기자, 「지난해 민중총궐기, 서울 8개 경찰서장들 청와대 경비」, mediatoday, 2016년 09월 12일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2094#csidxdc7c9c3dde43e9a9ce58b6393dc2df4>

원천봉쇄와 같은 공간통제 자체가 권력이 외화되는 양식이다. 따라서 모든 공간통제는 위임된 권력의 행사이기에 법적근거에 의할 때만 합법적 폭력행위로 인정된다. 대통령경호법에 의한 경호구역은 대통령경호실장이 지정하며, 경호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구역이다. 최소한의 필요범위에 한해 지정하게 되어 있으나, 경호실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정확한 구역을 비공개하고 있어 국민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대통령경호법으로 인해 청와대 인근 광범위한 지역의 집회가 실질적으로 금지되고 있고, 이는 청와대 앞 100m에서만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과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집시법의 개정도 필요하지만 청와대인근공간의 경우 대통령경호실법을 개정해야한다. 즉 경호실장의 재량이 아니라 '경호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법적으로 명시하거나 근거기준을 제시해야한다. 또한 그 결과도 당연히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경호기술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명확히 하면 그에 맞게 얼마든지 개발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한다.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임무인 것이다.⁴⁵⁾ 주권자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공간통제를 지배공간의 출현으로 보고 그것에 저항하는 것이다. 쟈센 (S. Jensen)의 연구에 의하면 공권력의 발휘가 공간통제로 가시화되며 공간통제를 통한 지배공간의 형성은 오히려 그 공간이 저항의 공간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말한다.⁴⁶⁾ 또한 공간지배는 법, 공권력만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으로도 진행된다. 이순신동상은 1968년 김종필이 총재를 맡은 애국선열조상건립위원회에 박정희가 돈을 내 세운 대표적 국가주의시대 조형물이다. 김종필이 낸 돈으로는 덕수궁의 세종대왕상을 만들었다. 이들 동상은 국가이념을 상징하는 공간의 경관을 구성한다. 이처럼 주권은 영토지배, 공간지배를 통해 구현된다. 그러나 전쟁이 아닌 일상에서도 '경호구역'처럼 법에 근거하면서도 법밖에 있는 예외적 권력이 작동한다.

8) 국제패권

주권과 주권의 관계로부터 국제권력이 탄생한다. 이 역시 주권권력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 정치주권과 경제주권의 관계에서 보면 국제권력은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주권의 저울 -주권국가
 주권의 시장 -상업제국
 주권의 공장 -산업제국
 주권의 은행 -금융제국

45) 대통령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현존할 경우 대통령 경호주체에 의한 통제 활동의 일환으로 경호구역의 과도한 확대와 재량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대통령경호실장이 경찰과 군을 아우르는 경호조직의 정점으로서의 지위와 재량판단에 따른 경호작용의 운용과 대통령의 안위라는 특수한 정치적 핵심 사안에 따른 폐쇄성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통령 경호의 정치문제 경향성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권한범위의 한계 설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법적 심사 및 사법 판결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판단기준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이상철, 이민형, 「국가 공권력작용의 정치적 함의-대통령 경호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21권1호, (2013), p.160

46) S. Jensen, "The streets of Beograd: Urban space and protest identities in Serbia", *Political Geography* 20(1), (2001); 정희선, 「서울시 집회시위 발생 공간의 특성과 변화: 1990~2003년」, 『국토지리학회지』38권4호, (2004), p.452

근대유럽국제체계는 예외상황을 결정하는 주권자에 의한 자본의 시초축적으로부터 비롯된다. 자본의 축적은 권력의 축적을 전제하고, 자본축적을 통해 권력은 재축적 된다.⁴⁷⁾ 그러나 국제 권력과 국제법의 관계에서 보면 국제권력은 다음 4가지 체계로 발전되어 왔다. 주권체계, 세력균형체계, 집단안보체계, 일국패권체계가 그것이다.

주권체계는 1648년 네덜란드의 베스트팔렌조약(Peace of Westfalen)으로, 세력균형체계는 1815년 이후 영국의 유럽협조체계(Concert of Europe)로, 집단안보체계는 19년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과 45년 국제연합(United Nations)으로, 미국패권체계는 트루먼 독트린 등으로 이미 모습을 드러낸 바 있었다.⁴⁸⁾

현재 주권과 패권이 일치하는 나라는 미국이고, 미국패권체계가 국제체계의 예외를 결정한다. 집단안보체계를 기준으로 국가간체계를 재배치하면 집단안보-주권간체계, 집단안보-세력균형간체계, 집단안보-미국패권간체계가 된다. 유엔 창설의 법적 문서인 유엔헌장에는 이러한 간체계(間體系)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⁴⁹⁾

나는 이를 유엔체계라고 한다. 집단안보-주권간체계는 유엔헌장 2조 1항의 주권평등 조항으로, 집단안보-세력균형간체계는 유엔안보리로, 집단안보체계 자체는 유엔총회로, 집단안보-미국패권간체계는 유엔헌장 8장의 집단적자위권과 지역안보기구 조항으로 구체화되었다.

유엔헌장의 예외는 제8장에서 작동한다. 1945년 유엔헌장 제정회의가 열렸을 때 미국은 유엔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들은 먼로주의에 입각한 ‘지역방위권’을 명문화한 헌장 조항을 억지로 수정하여 통과시켰는데 이는 결국 나중에 침략적 블록을 구축하는 법적근거로 이용되었다.⁵⁰⁾ 헌장 51조에 “개별적 혹은 집단적 자위의 권리”를 규정해놓고 있는

47) 이탈리아도시국가의 군주들이 전쟁 수행을 위해 발행한 채권에서 볼 수 있듯이 권력과 자본은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발전해왔다. 권력이 자본이고 자본이 권력이었다. 미국이 초기유엔에서 발휘한 권력은 세계 최대 채권국이란 사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권력과 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지는 계기는 전쟁과 같은 위기라는 점이다. 정상적 상황보다 예외상황에서 권력은 역설적으로 강화되었다. 예외상태란 그럼에도 무정부상태나 혼란상태와 다른 무엇이기 때문에 법질서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법학적 의미에서 하나의 질서가 존속한다. 주권체계가 생겨나기 전인 30년전쟁기간 동안 혼돈의 유럽국가간체계에 국제법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질서는 존재했고 이 질서를 결정하는 권한이 네덜란드연합주에, 특히 고도금융세력에 부여되어 있었다. 자본과 권력의 상관관계에 대해 공산당선언의 유명한 문구를 떠올릴 수 있다. “부르주아지는 자기의 모습대로 세계를 창조한다.”

48) 모델스키(George Modelski)에 의하면 근대국가간체계는 1500년경에 성립되었으며, 500년 동안 세계의 지도력(world readership)과 세계전쟁(global war)이 규칙적으로 순환해왔으며 100년 정도를 주기로 국가간체계의 순환이 되풀이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장주기(long cycle)다. 이 과정에서 모두 네 개 국가가 지배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고 한다. 포르투갈(1500~16세기말), 네덜란드(17세기), 영국(18세기~나폴레옹전쟁, 1815~1945), 미국(1945~)이다(Paul R. Viotti and Mark V. Kauppi,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Realism, Pluralism, Globalism* [New York: Macmillan, 1987], p.59). 장주기론은 세계체제론자인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이나 아리기(Giovanni Arrighi) 등의 저술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된다.

49) 진유정은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유엔체계는 기존의 비엔나, 비스마르크, 베르사유체제의 기본구조와 특성을 조합한 국가간체계라 할 수 있다. 먼저 협조 또는 지도체제적인 모습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5대 열강에게 거부권이 주어짐으로써 구체화되었다. 이 기본 틀은 냉전의 전개와 더불어 동서간의 새로운 블록 형성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었다. 동맹체계적인 특징은 유럽에서의 NATO와 바르샤바동맹(Warsaw Pact)이라는 군사동맹의 형성·대치 및 극동에서의 중소 군사동맹과 미·일 군사동맹으로 구체화되었다. 집단안보체계적 특징은 국제연맹과 유사한 유엔 설립으로 구체화되었다.”(진유정, 「근대국제체계의 변화와 연속성에 관한 연구: 체계이론과 현실주의론의 관점에서」, 동국대학교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 pp.70, 127).

50) 시바쇼프 외, 미국사연구회 역, 『아메리카 제국주의사』 (서울: 국민도서, 1989), p.188

것은 안보리나 총회기능의 극대화에 중요한 방해물이다.⁵¹⁾

향후 유엔의 집단안보체계가 자위권의 실행보다 빨리 결정되고 집행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51조 자위권논리는 무력화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미사일공격에 의한 평화의 위협의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30분정도이다. 30분 안에 위협의 실체를 판단하고 결정하여 실행할 수 있는 체계가 요청된다. 미국은 미사일방어훈련인 님블 타이탄에서 동맹국의 군인과 외교부 직원이 동시에 참여하는 훈련을 강화시키고 있다. 정치, 외교, 군사를 일치화시키기 위한 시도이다. 논리적으로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아닌 유엔에서 이를 성공시킬 수 있을 때 기술적으로 자위권조항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요망한 일이다. 이같은 체계는 국가 간(inter)체계에서는 달성하기 힘든 것이다. 초(trans)국가체계에 서나 가능한 것이다. 패권을 무력화시킬 집단안보의 기술적 요구는 국제체계가 아닌 초국가체계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전쟁은 처음으로 군사적 강제조치가 유엔의 이름으로 취해졌다는 점에서 유엔체계의 한 절정이었지만, 유엔의 법적·집단안보적 이상이 미국패권에 의해 왜곡됨으로써 유엔창설의 정신을 불구로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쇠퇴가 시작된 절정이었다. 1945년에서 1990년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70개가 넘는 주요 전쟁은 현장 7장 밖에 방치되고 있었다.⁵²⁾ 그에 비해 한국전쟁은 최초로 유엔의 이름을 단 군사적 강제조치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의심스러웠고, 때문에 유엔 창설 이후 체계 내 적대와 균열의 진폭이 가장 컸던 사건의 하나가 되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권력정치는 집단안보기구인 유엔을 내세워 무질서 상태에서의 패권(Hegemony)을 강화하는 데 성공하지만, 동시에 미국패권체계를 일시 후퇴시키는 구조를 만들고야 한다. 미국은 소련의 거부권행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아예 안보리 구조를 붕괴시키고 총회에 힘을 부여하기로 했다. 유엔창설의 핵심당사자였던 강대국 소련을 배제하고, 친미적인 약소국들과 손잡은 것이다. 이는 안보리 체제를 총회 체제로 바꾸기 위해 시도한 1950년 11월의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 총회 체제는 뜻밖에도 제3세계의 헤게모니를 양성시킨 모태가 되었다. 고양이를 키우려다 호랑이를 키운 셈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총회 회원국들의 주권체계가 강화되고 미국의 패권도 흔들리게 되는 역설이 발생했다. 미국은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성과보다 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전쟁 내내 유엔에서 벌어진 영국과 미국의 심각한 외교 갈등이 그러한 대가였다. 물론 그런 대가는 미국이 유엔에서 패권을 장악함으로써 누리는 특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다.

미국의 통합군사령부(Unified Command)가 유엔군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란 이름을 달고 유엔의 군대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패권국이 누리는 특권 중의 하나였다. 길핀(Robert Gilpin)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패권국가가 국제기구와 같은 일종의 공공

51) 조경근, 「집단안전보장의 이론과 실제: 한국전을 통해서 고찰해 본 문제점과 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회복을 위한 국제연합기능의 변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논문, 1982, p.34

52) 냉전 기간 중 안보리가 무력 사용을 허용한 예는 한국을 제외하면 로디지아뿐이다. 구속력 있는 비군사적 제재 역시 단 두 번 채택되었는데 한 번은 남로디지아에 대한 경제봉쇄(1966~1979)였고, 또 하나는 1977년 남아프리카에 부과된 무기금수였다. 1962년 쿠바미사일위기에서 미국은 일차적으로 미주기구(OAS)의 수권에 의해 일방적인 봉쇄조치(당시 미국 정부는 이를 quarantine으로 표현)로 대응했고 미국의 베트남전 수행에는 유엔총회나 안보리의 손이 미치지 않았다.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거듭된 충돌에도 안보리는 7장에 의거 제재를 채택하겠다는 위협만 되풀이하였을 뿐 실천하지는 못했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간섭(1979~1989)도 안보리의 주의를 끌지 못했다(김대순, 『국제법론』, 제11판 [서울: 삼영사, 2006], p.1086 참조).

재를 제공하는 이유는 국제경제체계 전체의 복지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선호하는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이 패권국가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때문이다.”⁵³⁾

미국패권의 쇠퇴 현상을 국제권력체계의 틀에 맞추어 대입시켜 보자.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는 단지 트럼프만의 공약이 아니라 거의 모든 대통령후보들의 공통공약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다른 모든 나라와 다른 것은 모든 나라가 미국이 지배하는 질서 안에 있어야 하지만 미국만은 자기가 수립한 질서 밖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패권국도 영원히 법질서의 밖에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자국의 탈법을 합법으로 만드는 능력이 진정한 패권인 것이다. 즉 법밖에 있으면서 법안에 있어야 한다.⁵⁴⁾ 그러나 이를 유지할 의지와 능력이 없을 때 패권은 몰락하기 시작한다. 패권의 생명은 안정성(Stability)이다. 불안정이나, 불안정에 기반한 균형(balance)상태는 패권후퇴의 전조이다. 미국패권의 융성이 권력과 권위의 결합에 있었듯이 미국패권의 몰락은 권력과 권위의 균열에서 시작된다. 이를 체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자.

주권체계: 주권국으로서 미국의 ‘우선주의’는 당연한 전략이다. 그러나 이는 패권국의 전략은 될 수 없다. 패권국은 자국의 패권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에 공공재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결국 패권국에서 일반주권국으로 전환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우선주의에 함축되어 있다.

세력균형체계: 세력균형에는 협조체계와 동맹체계가 있다. 미국이 선택한 것은 후자이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은 대서양동맹과 태평양동맹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정책으로 나타난 것은 동맹홀대, 동맹의 경제환원주의이다. 우방중의 우방인 캐나다를 모욕주고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회담성사를 약속하고 하루도 안 돼 한국대통령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북·미회담을 취소한다. 전통우방에게도 언제든 관세폭탄을 터트린다. 트럼프의 정책에 전통적인 미국 동맹외교의 규칙과 절차에 대한 존중은 안 보인다. 미국의 동맹은 너덜너덜해졌다.

유엔체계: 대북제재 등에는 유엔결의를 이용하지만 이라크전쟁이나 시리아공습에서 미국은 유엔안보리결의를 무시한다. 그러나 이는 이미 미국의 압박하에 제정된 유엔헌장 51조 집단적자위권조항에서부터 내재된 균열이었다. 미국패권체계와 유엔체계의 균열선이 항상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미국이 유엔에서의 패권적 권위를 유지할 수 있는 한계에 다가서고 있다.

미국패권체계: 패권국미국의 한계는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경제력도 군사력도 예전 같지 않다. 이란핵합의를 파기하면 다음수순은 제재일텐데 유엔과 유럽연합의 협조가 난망인 상태에서 미국정부의 힘만으로 제재할 능력이 과연 있는가가 의문이다. 이는 역으로 미국이 패권을 유지할 능력의 한계에 봉착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3) 권리의 소멸

1) 주체

53) Stephen D. Krasner, “Structural Causes and Regime Consequences: Regimes as Intervening Variable”, 1 in Stephen D. Krasner, ed., *International Organization* 36, Spring 1982, pp.197-199; 이상은

54) Carl Schmitt, *Politische Theologie: Vier Kapitel zur Lehre von der Souveränität* 2판, (Berlin: Duncker & Humblot, 1934)/김항 역, 『정치신학: 주권론에 관한 네 개의 장』, (서울: 그린비, 2010), pp.18,22,25,16참조

빈틈없을 것 같은 교환체계의 계산, 비례, 척도,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균열점에서 주체가 출현한다.⁵⁵⁾ 가장 합리적일 것 같은 계산은 모순위에 서 있다. 계산의 토대위에 서 있는 제도 역시 모순을 드러낸다. 제도의 성립은 배제를 전제하며 배제된 자들은 포함된 자들을 완전하지 못한 자로 만드는 타자로 드러난다. 그러나 더 깊이 관찰해보면 배제된 자들이 있기에 제도가 지탱된다. 따라서 배제된 자들은 제도의 밖에 있는 한 요소가 아니라 제도를 가능케 하는 토대이자 근거이다. 그러나 제도의 밖에 있는 것이 사회의 밖, 즉 자연에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같은 사회에 살면서 제도에서 배제되었기에 포함된 자와 배제된 자는 서로 무시할 수 있는 차이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대립관계에 놓인다. 같은 사회 안에 살면서도 투명인간으로, 유령으로, 좀비로 취급받는 자들의 자각은 대립관계를 초래하고, 여기서 주체의 출현이 목격된다. 주역 계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성인의 가장 큰 보물은 자리이며 그것을 지키는 것은 어짊이다.

聖人之大寶 曰位, 何以守位 曰仁.⁵⁶⁾

성인은 하늘의 소리를 듣는 자이다. 하늘의 소리는 곧 민심의 소리이다. 이는 언어와 의미로 표현되거나 기표가 되지 않는다. 민심은 아무리 정교한 여론조사를 동원해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민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자,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는 자가 성인이다. 주체의 소리, 주체의 부름(address)을 듣는 자이다. 성인이 서있는 자리는 주체가 출현하는 자리이다. 그래서 그에게 가장 큰 보물은 자리이다. 의미, 질서, 제도, 체계의 정점인 왕궁에 마련된 자리는 욕망의 자리이다. 욕망은 주체에 대한 사랑을 억압,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왕좌를 지키기 위한 수단은 욕망의 윤리이다. 만인지상 일인지하(萬人之上一人之下)나, 신하로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는 위극인신(位極人臣)은 왕의 자리에 한없이 가까워질 순 있지만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순 없다는 욕망의 윤리가 전제되어 있다. 이는 지배를 내면화시키는 환상이자 이데올로기이다. 그러나 윤리를 뜻하는 Ethics는 ethos를 어원으로 하는데 에토스가 바로 '자리'이다. 윤리는 인격, 교양 같은 기표로 자신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선 자리에 자기도 같이 서는 것이다. 그 주체는 제도에 의해 배제된 자이다. 배제된 자의 곁에 서는 것은 결단이고 결단은 사랑이다. 사랑의 책임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해 욕망으로 치장한다. 인격, 자질, 능력은 기표이다. 주체는 충동이며 결단이다. 주체의 자리에 서기위해,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기표가 요청될 뿐이다. 어질고 지혜로운 자가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부름에 응답⁵⁷⁾하기로 결단하는 자가 성인이다. 제도의 작동이 멈추고 주체가 출현하는 순간이 혁명이다. 주체는 혁명의 순간에 두가지 선택 앞에 놓인다. 하나는 자유주의의 길이며, 또 하나는 진보주의의 길이다.

자유주의정치의 귀감이 된 것은 파쿠비우스이다. 알프스산맥을 넘은 한니발부대의 공격에 직면한 도시 카푸아에서는 항쟁이 일어났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아무런 방비도 하지 못한

55) 주체는 균열, 틈새로서의 실재와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틈새로서의 실재가 주체의 자유로운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주체는 실재와 동근원적이다. (나종석, 「슬라보예 지젝의 헤겔 변증법 해석에 대한 비판-구체적보편성과 급진민주주의의 비판을 중심으로」, 『사회와 철학』27집, (2014), p.21)

56) 周易 繫辭傳 下

57) 지젝은 주체를 라캉을 인용하여 '실재의 응답'으로 표현한다. 슬라보예 지젝, 『이데올로기라는 송고한 대상』, 이수련 역, (인간사랑, 2002), p.292

원로원 귀족들을 처단하라는 요구가 들끓었다. 파멸적위기를 직감한 군주 파쿠비우스는 노련한 정치적지략을 발휘한다. 우선 원로원귀족들을 찾아가 당신들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으니 모든 것을 나에게 위임하라고 한다. 원로원은 그의 제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엔 화난 군중들 앞으로 나아가 당신들이 원한다면 귀족들을 모조리 처형하겠다. 대신 국정공백이 있으면 안되니 당신들 중에 귀족들을 대신할 지도자들을 뽑아달라고 한다. 원로원 처단에는 한 목소리였던 민중들은 막상 지도자를 뽑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자 누구는 이래서 안되고, 누구는 저래서 안된다고 하며 분열되어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했다. 분열과 혼란이 극에 달할 때쯤 파쿠비우스가 나서 중재안을 냈다. 여러분이 당장 지도자를 뽑지 못하니 우선 기존의 원로원을 유지하며 위기를 수습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민중들은 달리 방법이 없었으므로 파쿠비우스를 따랐다. 마키아벨리가 『로마사강의』에 소개한 일화이다.⁵⁸⁾

준비되지 않은 군중을 통치하는 방법으로, 파멸적 위기를 조화의 기회로 승화시키는 정치의 기술로, 마키아벨리는 파쿠비우스테제를 제시했다. 이는 민중을 지배할 수 있는 유능한 정치 지배엘리트를 위한 테제이다. 파쿠비우스테제는 민중의 준비 안 된 상태를 전제한다. 그러나 전제한다는 것은 민중이 영원히 준비될 수 없는 상태를 목표로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시지프스를 만드는 것이다. 파쿠비우스주의자들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국민 여러분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잘 알겠으나 여러분은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으니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겨 달라.’

이것을 뒤집은 진보주의정치의 귀감은 레닌테제이다. 1917년 2월 러시아혁명이 일어났을 때 파쿠비우스테제의 망령이 다시 살아났다. 혁명을 일으킨 노동자민중들이 의회가 있는 타브리 다궁으로 몰려가 우리를 통치해달라고 의원들에게 청원한 것이다. 그 결과 민중이 아닌 의회 권력에 의해 임시정부가 꾸러졌다. 이 같은 상황은 6월까지 지속되었다. 6월초 정국수습을 위해 처음 열린 전러시아소비에트대회에서 임시정부의 지도자는 “현재 러시아에 권력을 넘겨받아 ‘우리가 당신들을 대신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당이 과연 있는가”라고 다그치듯 물었다. 조용해진 대회장 한가운데서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기 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에도 모든 권력을 장악할 준비가 되어 있다.”⁵⁹⁾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레닌이었다. 당시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당은 소수에 불과했다. 그리고 혁명 후 전시공산주의의 실패과정을 떠올리면 완벽한 집권준비가 되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러시아혁명은 성공했고, 역사상 최초로 지배를 받기만 하던 민중이 지배세력이 되었다. 레닌은 민중의 주체성의 본질이 준비와 경륜보다 결단에 있음을 간파한 것이다.⁶⁰⁾

마르크스는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개인들 간의 협업자체가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⁶¹⁾는데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교환관계는 똑같은 권리를 가진 개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역사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해 진행된 본원적축적의 결과,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불평등한 상태를 이미 전제한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교환은 소외된 힘을 만들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자본주의국가는 부분적인 수술이나 개조만으로는 바꿀 수 없는 유기체이다. 국가권력을 창출한 주권의 주인이자 제한권력인

58) Machiaveli, *Discorsi sopra la prima deca di Tito Livio*, (1571)/황문수 역, 『정략론』, (서울: 학원출판공사, 1983), pp.306-309참조

59) 이재화 편, 『레닌Ⅱ』, (서울: 백산서당, 1986), p.39

60) 이시우, 「항쟁의 선택, 파쿠비우스냐, 레닌이냐」, (민중의 소리, 2016.11.9.)재인용:
<http://vop.co.kr/A00001086695.html>

61) 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박재희 역, 『독일이데올로기』1, (서울: 청년사, 1988), p.64

주권인민은 자유의지에 기초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 정체성을 재 정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유의지에 의한 인간관계는 소외가 아닌 단결로 나타난다. 그러나 진정한 단결은 의지만이 아니라 높은 생산력의 발전을 요구한다. 주권인민의 정체성은 물질적 힘을 인간의 지배아래 굴복시키지 않고는 소외된 권리, 권력의 노예가 되는 길을 피할 수 없다.

노동분업을 통한 인격적 힘(관계)의 물질적 힘으로의 전환은 그 전환에 관한 일반적 관념을 머릿속에서 몰아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각 사람들이 이들 물질적 힘을 다시금 자신들 아래 굴복시키고 그 노동분업을 폐지함에 의해서만 없어질 수 있는 것이다...이 공동체내에서만 비로소 인격적 자유는 가능해진다. 이 공동체를 대신했던 지금까지의 국가 따위에 있어서는 지배계급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에게만, 그리고 그들이 이 계급에 속한 사람들일 경우에만 인격적 자유가 존재했다...때문에 그것은 피지배계급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환상적인 공동체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족쇄였다. 참된 현실적인 공동체 속에서 각 사람들은 그들의 결사 속에서 그 결사를 통해서만이 자신의 자유를 획득하게 된다.⁶²⁾

'이게 월급이냐', '이게 회사냐', '이게 학교냐' 라는 국지적인 질문에서 '이게 나라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의 행동은 새로운 공동체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답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르크스에게 핵심은 자유의지를 가능케 할 물질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권의 교체가 아닌 국가권력자체에 대한 교체가 필연임을 밝힌다. 마르크스의 『프랑스 내전』에서 등장한 국가파괴테제가 그것이다. 김영수는 낡은 국가기구를 파괴한다는 것은 국가장치의 완전한 파괴 및 대체를 의미하기보다 인민의 권리를 권력으로 전화시키기 위한 국가권력을 새롭게 창조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한다. 새로운 관료와 관료기구, 새로운 군인과 군대구조, 새로운 통치인력과 통치구조 등이 인민의 권리를 실현하도록 재구성되는 것이다. 이것이 낡은 국가기구를 파괴시키고, 나아가 국가를 소멸시켜 나가는 디딤돌인 것이다. 이는 국가권력의 모든 힘이 인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인민과 함께 작동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⁶³⁾

이는 제한권력을 수립하고자 했던 주권인민들 앞에 항상 던져지는 고민이다. 낡은 국가권력의 지배에 거부하지만 새로운 공동체는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따라서 항쟁은 물신화된 국가권력의 허상을 깨고 개인들의 권리관계에 입각한 체계를 건설하는 시작이다. 또한 항쟁은 소외된 권리, 즉 권력중심이 아닌 자유의지에 입각한 권리중심의 관계를 수립하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⁶⁴⁾

이는 항쟁이 끝난 뒤가 아니라 항쟁의 과정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항쟁은 장기적이지 않고 단기적이며, 점진적이 아니라 급진적이며, 소멸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항쟁권력은 첫 번째, 자유의지, 즉 자기결정권을 가진 주체로부터 시작된다. 두 번째, 소외가 아닌 단결은 조직력의 형태로 등장한다. 조직력은 질이자 양이다. 세 번째 조직력은 힘이므로 힘은 대상과의 관계에서 발현되며, 대상에 대한 지배력으로 나타난

62) 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박재희 역, 『독일이데올로기』1, (서울: 청년사, 1988), p.109-110

63) 김영수, 「권리와 권력의 융합 메카니즘과 국가사멸의 시원성」,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봄 학술대회 자료집』, p.120

64) 권력은 권리를 배제하거나 대상화하는 힘을 발휘하면서 인민보다 우위에 위치하였다. 물론 인민은 권력의 힘에 대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복종의지를 전제로 지배-피지배의 관계를 유지하지만, 지배-피지배의 관계가 전복된 경우에는 권력의 힘을 자신의 권리로 끌어들인다. 지배-피지배의 관계를 맺는 형식과 내용이 '권력 중심의 관계'에서 '권리 중심의 관계'로 전이된다. (김영수, 「권리와 권력의 융합 메카니즘과 국가사멸의 시원성」,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봄 학술대회 자료집』, p.119)

다. 이는 공간에 대한 지배와 시간에 대한 지배를 요청한다. 항쟁주체의 지배력은 권력에 대한 권리의 지배력이다. 권리는 권력을 배제하거나 권리를 권력화하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가를 소멸시키는 조건을 마련한다. 마침내 자본주의의 유산인 권리는 국가의 소멸과 함께 현저히 약화된다. 그리고 권리지배의 완성과 함께 권리도 소멸한다.⁶⁵⁾

1. 자기결정권

항쟁은 소외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시작되므로 소외된 권리와는 구별된다. 그러나 소외된 권리가 토대로 하고 있는 물적 조건은 변한 것이 없으므로 소외된 권리를 완전히 극복한 새로운 권리도 아니다. 권리의 여러 속성 중 항쟁에서 부각되는 권리는 결정권이다. 결단을 하면서 항쟁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쟁이 지속되는 동안 권리는 국지적, 일시적으로 소외를 거부한 권리, 자유의지와 그에 기반한 권리가 된다. 소외된 권리는 복잡성과 은폐성을 띠지만 자유의지로서의 권리는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항쟁은 질적측면에서 보면 ‘권리주체’의 생성과 발전문제이다. 주체성의 척도, 민중권력의 척도는 자기결정권이다. 토론보다 결정이며, 준비보다 결단이다. 토론은 전원참여, 전원발언, 전원실천의 3원칙이 지켜져야 한다.⁶⁶⁾ 위기의 순간에 ‘토론만하는 집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지행합일(知行合一)은 인식과 실천사이의 간격이 발생한다. 그러나 단행합일(斷行合一), 즉 결단과 실천사이엔 간격이 없거나 작다. 수동적 동의, 소외된 동의보다 더 수준 높은 것이 자기결단이다. 항쟁기는 소외된 권리와 자유의지로서의 권리가, 권력과 자기결정권이 투쟁하는 시기이다.

2. 조직력

자기결정권을 가진 주체들의 관계는 소외가 아닌 단결을 이룬다. 단결은 조직으로, 조직의 본질적 관계는 힘으로 발현된다. 발현된 힘은 조직력으로 드러난다. 조직력은 질이자 양이다. 권리주체들의 단결의 척도가 자기결정권이라면 조직력은 이 척도에 양이 더해진 것이다. 항쟁조직의 양은 상대인 공권력과 비례관계로 결정된다. 공권력을 이루는 두 축은 군대와 경찰이다. 2016년 촛불혁명 당시 한국경찰은 11만이지만 이중 시위에 대응하는 경찰력은 의경포함 3만이었다. 연좌시위 해산에 2명, 폭력시위 해산에 5명의 경찰이 소요된다. 따라서 시위대가 1만 5천을 넘으면 공권력로서는 양적한계가 시작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찰은 질을 고양시킨다. 강도 높은 진압훈련과 군대의 무기에 해당하는 진압장비를 도입한다. 질적으로 강화된 경찰력은 수적열세를 만회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정예화 되더라도 10만명 이상, 100만명이 되면 경찰력은 한계에 이른다. 계엄으로 군대가 동원되기 전까지 항쟁주체의 조직력은 양적측면에서 권력을 배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다.

항쟁의 단계에서 비폭력이나 폭력이라는 논의가 시작되는 것은 항쟁이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근거는 형식이다. 항쟁의 형식이 문제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형식은 내용 없는 껍데기가 아니라 내용의 구조이다. 폭력이든 비폭력이든 고착된 인식이 여론을 분열시킨다. 문제는 조직력이다. 조직력이야말로 대립하는듯한 폭력과 비폭력의 근거이자 토대이다. 조직화된 비폭력은 폭력보다 강하며, 조직화된 폭력은 비폭력보다 평화적이다. 조직화된 비폭력이 즉흥적

65) 권리의 발생과 소멸이란 관점은 권리가 역사적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가치관계가 자본주의의 산물이듯, 권리역시 자본주의의 산물이다. 자본주의의 소멸과 함께 자본주의의 물적토대에 기반한 권리 역시 소멸한다.

66) 권리중심관계를 권력구조에 반영하고자 했던 시도로 만델라를 들 수 있는데 만델라 리더십의 특성은 “하의상달, 상의하달, 토론 의무화, 만장일치 가결이었다.” (Karl Von Holdt, *Transition From Below*, (Pitermaritzburg: University of Natal Press, 2003), pp.3-10)

폭력보다 힘이 세다는 것을 우리는 촛불항쟁에서 확인했다. 그러나 아무리 조직화된 비폭력이라도 공권력이 굴복하지 않는 한 한계에 도달한다. 그에 대한 답이 폭력이라면 맞다. 그러나 수세적 폭력은 발전이 아닌 퇴보이다. 조직화된 폭력만이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폭력이 비폭력보다 평화적이란 역설이 성립하는 것이다. 조직화된 폭력으로의 발전은 점진이 아니라 비약이다. 점진은 자연발생적이다. 그러나 비약은 과학적이다. 항쟁의 과학은 바로 이 비약을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소외된 권리는 피지배를 초래했지만 단결된 권리는 지배를 실현시킨다. 단결된 권리는 아직 권리체계를 건설할 조건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다. 지배권력의 포위 하에 있기 때문이다. 단결된 권리는 단결된 지배력으로 나타나며, 지배력 역시 권력인 점에선 동일하다. 지배의 대상이 다를 뿐이다. 조직력은 지배권력을 대상으로 맞설 때 지배력으로 타나난다. 지배권력을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가 조직력의 발전 단계를 결정한다.

‘Order’는 ‘요청’, ‘명령’, ‘질서’등 여러 의미를 가진 말이다. 이 말을 힘, 즉 지배력의 발전 단계에 따라 배열하면 다음과 같다. ‘요청’은 기존의 법질서의 틀에서 위임된 권력에게 소극적 힘을 행사하는 단계이다. ‘명령’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위임된 권력자로부터 권력을 환수하는 적극적 지배를 행사하는 단계이다. ‘질서’는 권력의 환수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권력이 요구하는 체제를 내면화시키는 단계이다. 질서란 외형적인 강제가 없이도 권력이 행사되는 내면화된 권력이다. 이를 ORDER1(요청), ORDER2(명령), ORDER3(질서)라고 명명하자. 나는 항쟁을 정권교체로, 혁명을 질서교체로 구분하고자 한다. 따라서 2단계인 ‘명령’이 항쟁, 3단계인 ‘질서’가 혁명이다. 새로운 질서를 창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듦으로서 항쟁은 혁명으로 이행한다. 2015년부터 시작된 민중총궐기는 1년간 ORDER1(요청)단계였다. 그러나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6년 11월 12일 정오까지 박근혜야를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함으로써 ORDER2(명령)단계에 들어섰다. 그리고 이후 ‘국민의 명령’이란 개념이 순식간에 퍼졌고, 누구도 낮설어하지 않는 개념으로 정착되었다. 이로서 항쟁주체는 ‘요청자’에서 ‘명령자’로 지위가 바뀌었다. 2단계의 과제는 낡은 법질서의 집행자인 공권력을 강제·지배하는 것이다. 이로서 자기결정권으로 단결한 항쟁조직은 명령자의 지위에 맞는 지배력을 갖춰야 하는 단계에 돌입한다.

3. 권리지배 (권리에 의한 지배)

ㄱ. 권력배제

권리지배는 우선 권력배제를 의미한다. 권력지배가 아닌 지배란 달리 말하면 비지배이다. 5.18광주에선 항쟁기간 시민들의 자치기구가 꾸려졌다. 프랑스혁명 당시에도 파리 코뮌이 수립되었다. 이들은 공권력을 배제하면서 평등을 지향하는 권리에 입각하여 수립된 질서였다. 항쟁주체의 조직력은 권력주체들에 대한 지배력으로 표현된다. 항쟁의 성공여부는 권력중심의 관계에서 권리중심의 관계로, 권력의 지배에서 권리의 지배로 얼마나 이행했는가에 달려 있다. 권리의 지배란 소수 권력자에 대한 다수인민의 지배이다. 압도적 다수에 의한 권리의 지배는 권력에 대한 평화적 강제까지 가능케 할 수 있다. 이 또한 촛불항쟁에서 체득한 교훈이다. 프랑스 내전기간동안 권리의 지배가 가능했던 것은 권력을 배제할 수 있는 공간의 지배가 전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력을 배제할 수 있는 능력이 소진되자 권리의 지배도 실패했다. 권력과의 생사를 건 투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권리는 관념적으로 현실에서 물러나 이상향을 건설할 수 없다. 국가권력의 폐지를 위한 조건에 대한 고려도 없이 즉각적 국가폐지를 주장하는 것도 현실성이 없다. 권력지배를 최대한 차단, 무력화시키고 권리의 주체들을 보호

하며 권리지배를 발전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권리지배의 권력화라는 고민이 대두된다.

ㄴ. 권리지배의 권력화

권력을 배제할 수 있어야 권력과 경쟁할 수도 있다. 권력과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은 권리와 권력이 상호 의존하는 상황이다. 권리지배가 일거에 달성되지 않는 한 권력과의 공존은 불가피하다. 이는 지배권력과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항쟁 주체내에서도 권리지배와 권력지배의 공존과 경쟁이 모색된다. 남아공은 1990년 이후 현재까지 아파르테이트 체제를 넘어서는 권력과 권리 간의 민주적 메카니즘을 구축하여 운영해 오고 있고, 베네수엘라도 2005년에 21세기 사회주의를 선언하고 난 이후 ‘민’이 주인되는 참다운 세상의 민주적 권력 메커니즘을 제도화하였다.⁶⁷⁾ 스탈린은 ‘소비에트정권은 파리고문의 발전이며 완성이다.’⁶⁸⁾라고 하며, 권리지배의 완성모델이 권력지배임을 주장한다. 권리지배를 주장하던 항쟁세력들이 권력지배와 공존하는 상황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권리주체들이 왜 권력의 강제를 채택하는가에 대하여 마키아벨리의 『군주론』9장에 대한 논의가 주목된다. 귀족의 욕구에는 ‘명령하려는 것’과 ‘지배하려는 것’의 구분을 두지 않았지만, 인민들의 욕구는 ‘명령을 받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지배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한다.⁶⁹⁾ 즉 인민들의 기질(umori)은 지배를 거부할 수 있다면,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명령, 즉 권력의 강제에 대한 자발적동의, 자발적위임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소외된 권리의 은폐수단으로서 ‘자발적동의’를 사용하는 것과 항쟁주체들의 동의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결정적인 문제는 지도자이다. 지도자들의 사익에 따른 비정상적인 행동은 한편으로는 합법적으로는 결코 ‘귀족에게 저항할 수 없다.’는 생각을 인민들에게 각인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민들에게 ‘명령받지 않으려는 욕구’를 불러일으켜 권력의 명령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다.⁷⁰⁾ 자본주의권력은 권리의 소외를 권력의 근거로 삼는데 비해 항쟁권력은 소외된 권리의 극복을 권력의 근거로 삼는다는 점에서 구조적 차이가 있다. 또한 권력을 위임받은 지도자가 얼마나 철저히 권리지배, 비지배를 정착시키기 위해 헌신하는가에 의해 권리주체인 인민은 명령과 강제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한다. 권리지배의 권력화는 ‘인민의 권리를 배제시키거나 분리하여, 국가나 사회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권력체제’를 ‘인민의 권리체제’로 전화하는 구조 혹은 인민의 권리로 국가의 권력을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구조이다. 베네수엘라 헌법 제89조 제1항은 인민의 권리를 현실의 권력으로 변화시킨 경우이다. 베네수엘라 헌법은 “어떠한 법률도 노동자의 권

67) 김영수, 「권리와 권력의 융합 메카니즘과 국가사멸의 시원성」,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봄 학술대회 자료집』, p.115

68) 이는 1924년 레닌 사후 스페르들로프대학에서 행한 강연록 「레닌주의의 기초」에 등장한다. 이어지는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비에트정권의 본질은 자본가와 지주들에게 압박받던 그 계급들의 가장 대중적이며 가장 혁명적인 조직들이 지금은 「전 국가권력, 전국가기구의 항구적이며 유일한 토대」로 되었다는데 있으며 「가장 민주주의적인 부르주아공화국에 있어서도」 법률상으로는 동등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에 있어서는 무수한 수단과 휴계로 말미암아 정치생활에의 참가와 민주주의적 권리 및 자유의 향유로부터 제외되었던 바로 그 대중이 지금은 국가의 민주주의적인 관리에 대한 항구적이고 확실한 더구나 결정적인 참가에 인입된다」는데 있다.(레닌, 24권, p.13참조) 이런 까닭에 낡은 부르주아민주주의적 의회형태와는 원칙적으로 다른 국가조직의 새로운 형태인 것이다.’(이.웨.쓰탈린, 『이.웨.쓰탈린 저작집』제6권(1924), (모스크바, 외국문서적출판사, 1955), p.166) *이 번역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북한 서적인데 북한출판사에 대한 서지가 없는 점이 특이하다.

69) 곽준혁, 『지배와 비지배』, (서울: 민음사, 2013), p.188

70) 곽준혁, 『지배와 비지배』, (서울: 민음사, 2013), p.197

리와 급부에 관하여 그 불가침성과 향상성을 손상시키는 조항을 제정할 수 없다.”⁷¹⁾고 규정하였다. 베네수엘라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인민의 각종 권리들을 권력으로 실체화하였다. 베네수엘라의 국(공)영 기업에 대한 인민의 감독을 실질적으로 단행할 수 있는 시민사회권력이 헌법 제273조로 보장되었다. “시민사회권력은 인민의 수호자, 검찰총장, 감사원장으로 구성되는 공화국 윤리위원회이고, 이 권력체는 국(공)영 기업에 대한 감독과 통제의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그래서 헌법 281조 2항은 공화국 윤리위원회의 구체적인 과제까지 제시하였다. “시민권력체는 국가의 공공사업이 적절히 기능하는지의 여부를 감독하고, 공공재화를 생산·관리하고 공급하는 행정의 업무가 독단 행위, 권력 남용, 과실 등으로 인민의 합법적이며 집합적, 광범위적인 모든 이익과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한다.”

남아공은 대표적인 것이 ‘국가권력의 4권분립’이다. 남아공 헌법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그리고 시민사회권을 보장하였다. 시민사회권력은 구체적으로 헌법상의 민주주의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독립된 국가기구로 구성되었다. ‘공공호민관’(Public Protector), ‘국가회계감사관’(Auditor-General), ‘인권위원회’, ‘문화·종교·언어 공동체 보호발전위원회’, ‘성평등위원회’, ‘선거위원회’는 남아공 인민의 사회적 권리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국가권력의 기구이다.⁷²⁾ 모든 국가기구와 그 구성원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수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또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예산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는 그 예산안을 토대로 국가의 예산을 확정한다. 남아공의 시민사회권력은 모든 국가기구에 인민의 권리를 투영하기 위한 진지이자, 인민의 권리를 권력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국가가 소멸되지 않거나, 지배-피지배의 통치관계가 지속되는 한, ‘권리 중심의 관계’를 구체화하는 것은 국가의 ‘권력 중심의 관계’ 속에 인민의 권리를 투영시킬 수 있는 권력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인민에 대한 국가의 지배를 국가에 대한 인민의 지배관계로 변화시키며 국가소멸의 조건을 마련해가는 것이다. 만약을 가정하면, 권리지배의 완성은 국가소멸은 물론 권리자체의 소멸을 의미할 것이다.

2) 권리의 소멸

국가가 소멸되고, 사적소유가 없어지고 공동소유가 전면화되어도, 비록 개인적이지만 개별 노동능력 차이에 따른 권리의 불평등은 지속된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사적소유가 철폐된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에서도 부르주아적 권리인 평등한 권리는 잔존한다. 일한 만큼 분배하는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사회는 노동량에 대해 상품교환의 원리인 등가교환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평등의 요체는 평등한 척도인 노동으로 측정된다는 데 있고…권리의 요체는 본성상, 오직 동일한 척도의 적용에만 있을 수 있다.”⁷³⁾ 이처럼 능력만큼 분배받는 노동의 등가교환원리는 능력에 따라서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분배되는 공산주의 높은 단계에 들어서 사멸한다. 상품의 이중성에서 교환의 필요성이 사라지면 상품규정 자체가 소멸하듯이 권리의 이중성도 권리를 교환할 필요성이 사라지면 소멸한다. 그러나 평등한 권리가 부르주아적 권리라는 것은 부르주아국가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낮은 단계이든 높은 단계이든 공산주의는 국가가 소멸한 상태를 전제한다. 이는 낮은 단계 공산주의에 부르주아적

71) 베네수엘라, 헌법 제89조 1항, 2009(세계법제정보센터)

72) 김영수, 「권리와 권력의 융합 메카니즘과 국가소멸의 시원성」,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봄 학술대회 자료집』, pp.117-119

73) K. Marx, 「고타강령초안 비판」(1875), 『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4』, (박종철출판사, 1991), pp.376-377

잔재가 남아 있다는 의미일 뿐이다. 혁명 전 레닌의 글을 보자.

어떤 자본가들과 계급들도 존재하지 않게 되면 국가도 사멸하게 되며 그 결과 어떤 계급도 억압받지 않게 된다. 그러나 부르주아적 권리에 대한 보호가 여전히 존재하고 실질적인 불평등이 인정되는 한 국가는 완전히 사멸한 것이 아니다. 국가가 완전히 사멸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공산주의가 필요하다.⁷⁴⁾

첫 번째 문장은 맞다. 그러나 두 번째 문장은 마르크스의 「고타강령초안비판」에 대한 오독으로 보인다.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에서도 부르주아적 권리가 잔존한다는 것을 부르주아국가도 잔존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낮은 단계 공산주의 역시 공산주의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국가소멸로서만 도래하는 공산주의사회에서 여전히 국가가 존재한다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오독은 러시아혁명이후 국가가 잔존하는 공산주의라는 인식하에 전시공산주의라 불리는 무리한 공산주의정책의 추진을 초래했다. 물론 1921년 레닌은 이러한 오류를 명확히 반성하고 바로 잡았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명확히 분리하고 사회주의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이행기, 과도기로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1921년 이후에도 혼동은 계속된다.⁷⁵⁾ 오히려 혼동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정리한 것은 스탈린이다. “공산주의 시대에 가서도 역시 우리에게 국가가 보존되겠는가? 그렇다…만약 자본주의적 포위가 없어지고 사회주의가 포위하게 되면 물론 국가는 보존되지도 않고 사멸될 것이다.”⁷⁶⁾ 일국적 공산주의란 불가능하며 자본주의의 포위 하에서 일국혁명은 일국에서 고립된 지역적 항쟁세력의 신세와 다를 바 없다. 프루동의 화폐 없는 사회 실험이 자본주의의 포위 속에선 공상이었듯이, 권리의 지배도 제국주의권력의 포위 속에선 공상이라는 것이다. 레닌이 혁명 직후 화폐를 폐지하고 결재권으로 대신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결국 물신주의를 감수하며 화폐를 부활시킨 것처럼, 국가권력물신주의를 감수하면서도 국가권력을 받아들였던 것은 바로 자본주의포위 때문으로 설명되었다. 엥겔스는 『반듀링론』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한 후 국가는 사멸해야 한다고 했는데, 단, 이것은 모든 나라 또는 대다수의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 승리를 염두에 둔 것이다. 부르주아적 권리의 시원은 자본주의생산양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므로, 그것은 당연히 세계적인 것이다. 국가를 전제로 한 권리지배의 권력화가 세계적 범위의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고타강령초안비판」에서의 마르크스의 ‘부르주아적 권리 잔존’ 논리에 따르면 권리의 소멸은 생산수단의 사적소유폐지, 국가의 소멸보다 뒤에 이루어지는 셈이다.

국가는 권력의 물신화이며 이는 권리의 이중성 속에 내포된 모순으로부터 시작된다. 권리의 이중성이 권리의 소외로 나아가느냐, 권리의 단결로 나아가느냐에 의해 국가와 항쟁의 길이 나뉜다. 국가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며, 국가로서의 시민사회와 국가로서의 국가 전체가 변혁되지 않는 이상 부분적인 개조로는 국가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무의식적, 습관적으로 행하는 자본주의적 교환이 우리를 소외시키는 힘이며 지배권력을

74) V.I. 레닌, 김영철 역, 『국가와 혁명』, (서울: 논장, 1988), pp.117-118

75) 예를들면 1922년 3월 러시아공산당중앙위 정치보고에서 레닌은 ‘이행기란 타파되었지만 아직 절멸되지 않는 자본주의와 이미 탄생은 하였으나 아직은 약한 공산주의 사이의 투쟁의 시기’라고 정의한다. ‘약한 공산주의’가 낮은 단계 공산주의라면 레닌은 이행기를 공산주의초기단계까지로 보고 있는 것이며 이는 국가의 존속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V. I. Lenin, “Political Report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Russian Communist Party(Bosheviks)(1922. 3. 27).” *Collected Works*. vol.33, (Moscow: Progress Publishers, 1965), p.263참조)

76) 스탈린, 「소련공산당(볼셰비키)제18차 당대회에서 행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1939); V.I. 레닌, 김영철 역, 「국가론-부록」, 『국가와 혁명』, (서울: 논장, 1988), p.199

생산·축적시키는 원천이라는 사실, 따라서 나 자신도 그 공모자라는 사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즉 나의 밖에 저항할 국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관성자체가 국가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자각된 자유의지로서의 선택만이 권력지배를 배제하고 권리지배를 완성시켜나가는 길이다.⁷⁷⁾

미국의 우파국제정치학을 대표하는 존 미어샤이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미래에 관한 팩트는 없다. 미래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론이 필요하다.”⁷⁸⁾ 그렇다. 우리에게 가능한 미래는 이론이다. 이론은 객관현실을 반영한다. 자기완결적 이론일수록 객관적 현실을 더 많이 반영하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오래된 이론이라고 해서 낡은 이론은 아니다. 설익은 새로운 이론보다 체계적 이론이 상대적으로 더 유효할 수 있다. 촛불혁명은 최근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건이었으나 아직 이것을 설명할 자기완결적 이론이 토론되거나 연구되었는지 의문이다. 소련붕괴 후 많은 이론체계들이 폐기되다시피 했다. 그 이론의 무덤에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되는 이론들을 발굴하여 이 글에 이용했음을 밝힌다.

77) 자기결정권부터 여기까지의 논의는 졸저, 「국가와 항쟁」, 『‘국가란 무엇인가’심포지엄자료집』, (복합문화공간에무, 2017.5.25)에서 재인용하였다.

78) 존 미어샤이머, 「중국의 부상과 한미관계의 미래」, (한국고등교육재단강연 2018.5.14.)